

RULES FOR INVESTIGATION THE SCENE OF CRIME

- ROMANIAN THEORY AND PRACTICES -

■ By Ph.D. Lecturer Lazar Carjan¹⁾

1. The notion, purpose and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scene of crime

1-1. Notions

The investigation of a scene of crime represents an initial procedural activity oriented to obtai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vents leading to the crime committing, the identification, isolation and gathering of the tracks resulted from the criminal activity and to get material evidences with the purpose to identify the doer as well.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can also be supplementary - when it takes place repeatedly or whenever necessary - after the crime has been identified.

A special role is gran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n order to identify the doer and to solve the criminal file within the forensics literature. The scene of crime is defined by the Romanian Penal Proceedings Code (Art.30, last paragraphs) as being: "the area where the criminal activity took place or the area where the result of it occurred".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regulated in Art.129-131.

By the scene of crime we understand the followings:

1) 루마니아 경찰청 전(前) 감찰국장, 현 Spir Haret 법과대학 교수

- ▷ The specific area where the crime took place (premises or field area);
- ▷ The area where the objects used for committing the crime or the objects which results in the crime outcomes have been found;
- ▷ Doer's or victim's access or escape ways.

These areas are often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whole although there can be found very large distances between them.

One can proce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when it is necessary to:

- ▷ identify the scene of crime;
- ▷ isolate and gather the crime evidences;
- ▷ establish the location and condition of material evidences and also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commitment.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also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events leading to the crime committing even if a certain interval of time has passed from its commitment and the criminal area has been altered.

1-2.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represents an initial step of investigating crimes. This is compulsory in the case of the victim's death, serious body injuries, burglaries, car thefts, robberies, rapes leading to the victim's death, traffic accidents resulting in the victim's death and leaving the scene of crime, fires, explosions, calamities.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possible and compulsory even in the cases in which the event has been reported with some delay (eg: robbery reported after the victim leaves the hospital).

This is an immediate activity that has to be performed as close as possible to the moment the crime was committed.

In principle, this activity is irrepitative because of the alterations of the scene of crime.

1-3.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 ▷ is often the only way of gathering the evidences in the initial stage;
- ▷ is of a great importance for knowing the truth;
- ▷ contribut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doer, gathering the necessary data as regards the doer's personality and his/her modus operandi.

1-4. The activities performed within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are regelemented by Art.129 from the Penal Proceedings Code and are described within the forensics literature:

- ▷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in order to establish its nature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mmitment;
- ▷ the identification, isolation, gathering and examination of the tracks and other material evidences;
- ▷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s route (iter criminis);
- ▷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s modus operandi;
- ▷ the timing of the crime commitment;
- ▷ the identification of the person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case: doers, witnesses, victims, persons responsible from the civil point of view;
- ▷ the elaboration of the first versions necessary to the subsequent investigations.

1-5. Procedural aspects

During the criminal pursuing stage,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to be performed after the initiation of the criminal pursuing that can be requested immediately or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Usually it is performed in the presence of assistant witnesses except when this is not possible.

The investigation can be performed in the presence of the parties involved, but if the requested parties are not present, the investigation still carries on.

The person suspected to have committed the crime, either retained or arrested, can be brought for investigations. If this is not possible, the criminal pursuing body will inform him/her that he/she has the right to be represented and – upon request – can provide him/her the representation.

The defender of the person suspected to have committed the crime has the right to assist to any act of criminal pursuing, inclu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During the judicial trial stage, the instance can proce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under certain conditions by notifying the parties also in the presence of the prosecutor when its taking part into the judicial trial is compulsory.

The persons who are present to or come to the scene of crime can be prevented from communicating to each other or with any other persons or to leave the place before the investigation ends.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should be registered into a report which shall include the followings:

a. general data:

- ▷ date and place of filling the report;
- ▷ name, surname, capacity of the person who fills in the report and the unit to which the person belongs to;
- ▷ name, surname, occupation and address of the assistant witnesses;
- ▷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tate of facts as well as of the taken measures, alterations that occurred, the persons who perform the alterations and their purposes and the persons found at the scene of crime;

- ▷ name, surname, occupation and the address of the persons to which the report refers to the objections and their explanations;
- mentions provided by the law for special situations.

b. other special data:

- ▷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cene of crime;
- ▷ tracks found, isolated and gathered; establishing the area where the tracks were found and the distances towards certain points (window, door, tree etc);
- ▷ objects analyzed and gathered, the description of their features in order to be identified (model, brand, type etc), dimensions, colour, shape, quality;
- ▷ condition of the tracks or object (clean, dirty, hot, cold, frozen, melted, with/without specific smelling);
- ▷ conditions of discovery;
- ▷ description of the methods used for packing, labeling and sealing;
- ▷ picked-up quantities;
- ▷ identified negative circumstances and the measures taken in order to clarify them;
- ▷ weather condition: raining, snowing, hot, freezing, blowing etc;
- ▷ measures taken towards the victims, doers and objects involved in the event;
- ▷ taken judicial photos: orientative photo, draft photo, main objects photo, detailed photos and photographic measures by mentioning the camera and film brand;
- ▷ mentions on recordings: video tapes recordings or photo or video-digital recordings;
- ▷ used lightning technique;
- ▷ mentions on the draft-plan including the used scale or the elaborated draft drawing;
- ▷ outcomes of using the police dods;
- ▷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ting persons, material evidences gathered and left in custody on the scene of crime and the doer's objections as well;

- ▷ the time when the investigation begins and ends with the precise mentioning of the weather and visibility condi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 ▷ number of copies and their destination.

The report shall be clear, precise and concise and shall present objectively the situation identified on the scene of the crime. The report shall be signed by the judicial body, assistant witnesses and any other persons, on each and every page and the blank spaces of the page shall be marked by crossing a line along them.

The experts' or assistants' opinions regarding the way the crime was committed and the doer shall not be put down into the report.

It is preferred that the report shall be done on the scene of crime in order not to lose the details relevant for the investigation.

The report is done by a person whose competency and skills are proved by the quality of the report. Hans Gross mentioned in his *Manuel pratique d'instructions judiciaires*, Ed. Marchal et Billard, vol. I, Paris, 1899, p. 148: "The repor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also represents a challenge for the instructing judge. One cannot notice anywhere but here the skills, safety of perception, logic of the sense, methodic purpose oriented perseverance but one can also notice here the instructing judge's unskillfulness, weakness of the perception, disorder, unsafetiness and hesitation."

2. TACTICAL RULES FOR PREPARING THE INVESTIGATION ON THE SCENE OF THE CRIME

2-1. The criminal prosecution body, upon receiving the claim, must immediatel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To identify the person who filed the claim;

- ▷ To gather the first data on the committed crime, committing area and timing, number of victims and their condition, if the doer is known, nature of and the extent of damages;
- ▷ To inform the superiors by phone on the event;
- ▷ To take urgent measures that must be taken by the police local bodies until the forensic team arrives in order to: save the victims, guard and preserve the scene of crime, forbid the intrusion of the potential curious persons, identify and hear the eye witnesses, identify and retain the doers;
- ▷ To set-up the forensic team made up by: the judicial prosecutor who is the team head, judicial and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rs, forensic detective, coroner, agent with the police dog and other experts if necessary;
- ▷ To ensure that the civil parties, victims, doers or their defenders are present;
- ▷ To prepare the appropriate forensic scientific and technique means;
- ▷ Universal forensic kit;
- ▷ Photo and specialised kit;
- ▷ Mobile forensic laboratories;
- ▷ Means of detection;
- ▷ Technical means of identification on external personal data;
- ▷ Urgent arrival to the scene of crime.

2-2. Specific tactical rules for investigating the scene of crime

a. the person who arrives first to the scene of crime must immediatel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to provide the victims with the first-aid even if this could lead to certain alterations of the scene of crime;
- ▷ to register the first area aspects and to establish the alterations occurred;
- ▷ to keep the curious persons away from the scene of crime;

- ▷ to keep away from imminent dangers – fires, explosions, floods etc;
- ▷ to protect and preserve the tracks from the weather conditions;
- ▷ to identify and hear the eye witnesses;
- ▷ to register certain circumstances that may disappear: smellings, furniture position, sets that are on when arriving the scene of crime and the arrival time as well;
- ▷ to identify the suspects;
- ▷ to notice the relevant judicial body to proce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 ▷ to guard the scene of crime (premises) and to prevent the access to it for unauthorized persons: if there is an opened area, a place as large as it is possible shall be blocked.

Nota bene

It is recommended to:

- ▷ take the first photos of or film the victim or corpse when arriving at the scene of crime;
- ▷ to put down the arrival time, persons found at the scene of crime or those we have information that have reached and left the area, the initial victim's condition and all the alterations occurred within the scene of crime;
- ▷ to surveil all the persons found at the scene of crime in order to follow their attitude and behaviour towards the committed crime;
- ▷ do not touch the corpus delicti, suspect remains and do not modify anything; maintain the scene of crime as you found it;
- ▷ to put down the eye witnesses' observations but do not alter anything;
- ▷ to put down the condition of the safety devices (way of locking the doors,

- whether the bolt or the safety chains were used etc); the windows stage (opened, shut, if the curtains were drawn); weather conditions; functioning of certain sets (radio, TV, phone, cooking machine, refrigerator etc); if the light was on; constant smellings (if necessary, gathering the tracks);
- ▷ do not use the toilet or flush the water;
- ▷ do not share any opinions and do not have any conversation with the witnesses;
- ▷ do not forget, until the forensic team arrives, that the doer still might be on the scene of crime.

b. Only the head of the forensic team together with the forensic detective are allowed to enter the scene of crime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in order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To establish the access ways and the order of entering for the other members of the team: coroner, forensic detective and police dog;
- ▷ To forbid any other activities that can bring prejudices to the investigation: smoking, clothes cleaning, creation of other tracks;
- ▷ To select the assistant witnesses from the kin related persons to the doer or the victim(s);
- ▷ To get the information useful for establishing the suspects among the persons who are related to the victim or are suspected by the latter. The information will be completed with the data gathered from the doer, relatives, neighbours, eye witnesses;
- ▷ To inquire the persons found at the scene of crime in order to establish relevant data regarding the initial stage of the scene of crime.

2-3. The investigation shall have two stages: a static and a dynamic one, conventionally established after the following general tactical rules:

- a.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shall be done immediately by avoiding superficiality and rush

It is important to arrive to the scene of crim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vent was reported. Any manager shall, from time to time, establish – as a main target – to arrive at the scene of crime during an optimum interval of time.

- b.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shall be done based on a rigorous and steady plan

The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each and every case is unique, but the approach of any event shall be done based on a rigorous and steady plan by establishing all the activities that must be performed and their sequence. The head of the team shall establish precise tasks for each participant by establishing strict rules.

The forensic detective shall, from the start, be let doing his job without being supervised. However, the head of team shall ask him to plan the investigation of each part of the scene of crime after a sequence commonly established.

- c.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shall be objective

The intuition and pride must be left aside because they can bring prejudices to the investigation.

One should follow the rule that any tracks found on the scene of crime have initially the same value even if apparently they are contradictory or seem to lack importance.

- d.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must be systematic and complete

The forensic detective must have a lot of patience and investigate every part of the scene of crime focusing on discovery of the tracks left within places where a regular visitor should not be allowed (drawings, under bed, on window surfaces, behind furniture etc.). These tracks can be relevant for the cause, thus ensuring the success of the investigation.

One should avoid taking photos in excess, still no detail should be left aside. You will never know when such a detail could solve the cause! For example, in a homicide case, an alienated person who was a regular visitor of the victim, confessed that he climbed into the balcony by using a ladder found on the scene of crime that was thrown a few meters away. The suspect became credible only when he demonstrated that he used as a support for the ladder a simple stone which was captured in one and only photo by the side of a ladder. No one gave it any importance although it was finally proved that it became indispensable for the cause.

- e. The investigation team will be led by a chief who will coordinate all the activities and will manage the investigation.

If there is a homicide investigation, the head of team will be a prosecutor, usually, a forensic detective. The head of team will pay attention to obey the tactical and methodic norms in order to identify, gather, pack and to transport the tracks in safety conditions.

The head will distribute the tasks and will corroborate all the data and information that he has got and will manage them in order to identify the doer. His tact is very important for the whole team motivation and professionalism.

- f. The procedural norms must be strictly obeyed

▷ The legal norms must be obeyed without any failure, irregardless of how tempting certain "procedures" leading to the success of the case are;

▷ The routine must be accepted but only as professional rigour in the light of the

law;

- ▷ The relation with mass media must be based correct and on mutual trust.

The experience has showed that the journalists must be allowed to come sufficiently closer to the scene of crime but never into it and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on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o repeat the latter, thus the scene of crime should not become a "stage". One should also take care in order to protect certain intimate data of the cause which could let the doer become aware of them. In the same time,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press could find out the hottest data by itself and to ignore or not paying attention to journalists could become extremely dangerous for the investigation.

That is why the press has to have a strong story but you must also secure the most important data for the case.

The report of the investigation must be immediately analysed by the competent chief. Certain lacks could be filed up or some errors could be avoided so that you will end up by having a new case with an unidentified doer.

3. The stage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 both in theory and practice – between the static and dynamic stages, but one can distinguish between them only conventionally because they go together.

3-1. The following activities shall be performed during the static stage:

- ▷ To take orientation photos of the persons found at the scene of crime. One could not even realize how useful this thing can be for the investigation!

One of the most debatable things is the possible return of the doer to the scene of crime because of the postcriminal amnesic phenomenon:

"The doer is not feeling secure, he can't remember whether everything was left as it was, whether he/she committed the fatal error to have left something behind that could betray him/her. For this reason he/she can hardly resist to the strong impulse of returning to the scene of crime, a return that in most of the cases is fatal." (Tiberiu Bogdan).

- ▷ To record the first information from the police officers who secure the guard, in order to establish the potential occurred alterations.
- ▷ To limit the researched area.
- ▷ To walk around the scene of crime in order to know the area and to identify certain indicators for investigation.
- ▷ To get oriented to the scene of crime from the criminalistic and topographic point of view.
- ▷ To establish the point from which the investigation starts, the way and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oint from which the investigation starts may be center of the area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n the auxiliary areas are researched until the peripheral ones (eccentric research), but the initial point may also be a peripheral one coming towards the center (concentric research).

The scene of crime may be divided into sectors by establishing the order of the examinations or could be reasearched in only one direction (linear).

- ▷ To mark the access way to the scene of crime
- ▷ To establish the state and position of the objects related to the cause and which are carrying the tracks.
- ▷ To take the orientation and assembly photos following the technical criminalistic rules; to make the video recordings and draft of the scene of

crime.

- ▷ To use the police dog in order to follow the human smelling trace (if the atmospheric conditions allow this).
- ▷ To get data and information useful to lead to the doer's identification (during this stage).
- ▷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follow the known or presumptive doer (notice with the doer's personal data at the state frontier).
- ▷ To take the measures in order to follow the objects related to the crime commitment or the stolen goods, if specific identification elements for identification are known.
- ▷ Do not allow anybody to touch or change the position of the objects within the scene of crime!

3-2. The most important stag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represents the dynamic stage and will include the following activities:

- ▷ To examine in details the corpse and the objects having tracks on them.
- ▷ To take photos of the main objects and of the corpse.
- ▷ To identify, isolate and gather the tracks.
- ▷ To identify and analyze the mechanisms used to commit crimes.
- ▷ To finalize the draft of the scene of crime or other drafts: the orientation draft, the draft of the scene of crime, the draft of any part within the scene of crime and of other main objects, the draft of the tracks and the detailed draft.
- ▷ To pack, label and seal the tracks.
- ▷ To hear the suspect persons, witnesses and victim by following the hearing tactical rules. If possible, the statements will be recorded on magnetic and video tape.
- ▷ To establish the doer's personal data and profile and, if necessary, to proceed to

the general pursuing.

- ▷ To clarify the negative or controversial circumstances which have been created by the doer in order to mislead th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do a systemic and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n order to give a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s posed during the course of investig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certain specific tracks or to clarify the circumstance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door locked from inside, closed windows).

To clarify these circumstances is necessary especially in the cases involving crimes committed by using fire arms, when a homicide committed by shooting is dissimulated into a suicide or when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tried to make the suicide look like a homicide.

- ▷ To put down into the report the conclusions resul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 ▷ To repeat and start over again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 ▷ To repeat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necessary when it was interrupted because of certain atmospheric conditions (darkness, storm, raining) or there are solid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s life, wealth and goods are put into danger.

Tactical Rules

- ▷ The head of the team must require from each and every member of it to put down chronologically all the activities and conclusions: datum, the hour when the investigation begins and ends, the description of the scene of crime, the identified and checked persons, the obtained data and, in general, all the data of operative interest which can become a real "treasure".
- ▷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on and guard, if necessary.

- ▷ The investigation must be carried on by the same team.
- ▷ The period of interruption and the motives that caused it will be mentioned on the repor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 ▷ In principle, the investigation of the scene of crime is irrepeatable: however, it might be repeated if it was done superficially or there were found new clues about other tracks or corpus delicti.

4. Materials and devices used for investigating the scene of crime

4-1. The universal forensic kit includes the following:

- ▷ Materials necessary to take photos: cameras, focus-lenses, intermediary rings, films, blitz, batteries, tripod, lamps, filters (coloured and for polarisation);
- ▷ Materials necessary to search, identify, isolate and gather the fingerprints: magnifying glass, light sources, ultraviolet lamp, powders and stressing reagents, squarell and magnetic brushes, iodine steam vaporizer, white and black adhesive thin sheets;
- ▷ Materials necessary to make a cast for deep tracks: scoop, spatula, spoon for preparing a blend, flexible band to surround the track (this is the place where the blend will be placed), brush for cleaning the track, ghips and other cast need materials, dental materials, varnish, special substances;
- ▷ Materials necessary to take the corpses' fingerprints: bord, roll, ink, mono and decadactilar records, paste, special paper for chemical reactions, surgery gloves, cardstrip;
- ▷ Materials necessary to draw the substances, including the biological ones: vacuum cleaner, tweezers, droppers, capsules, solutions, cotton, adhesive band and magnet;
- ▷ Materials necessary to elaborate and draw the drafts: ruller, square, protractor, millimeter paper, draughtman's board, tracing paper, compasses, compas,

templets, drawing pins, black and coloured pencils;

- ▷ Materials for making the place and do the measurements: centimeter, white and black squared band, numbered counters (with stand), chalk;
- ▷ Material for packing: plastic bags, paper bags, glass recipients, string, nails, boards, labels;
- ▷ Tools: hand saw, tongs, patent, hammer, screwdriver, auger, chisel, scissors, spanner set box.

4-2. Complementary materials

- ▷ Spotlights and electrogenic groups
- ▷ Portable laser set
- ▷ Polilight lamp
- ▷ Infrared image electric converter
- ▷ Video camera, audio and video recordings
- ▷ Materials for protecting the tracks and objects
- ▷ Rubber boots, gas masks, seif eyeglasses
- ▷ Seif equipment for fires and explosions
- ▷ Welding device
- ▷ Ladder, hoe, strings

4-3. Detectors

- ▷ Metal detector
- ▷ Radioactive substances detector (in case of calamities)
- ▷ Corpse detector (in reaction of the decay gases)
- ▷ Electrostatic detector for foot traces

4-4. Special kits

- ▷ Kits for drug identification
- ▷ Kits for making the objects with fluorescent powders (chemical traps)
- ▷ Kits for document examination
- ▷ Kits for unidentified corpses examination
- ▷ Kits for biological tracks
- ▷ Kits for fire arms tracks.

5. Modern Forensic Kits

The forensic kits must address to the special field needs and can be adapted according to vary criteria to solve different request in order to ensure a maximum efficiency in searching, identifying, isolating and gathering all kind of tracks.

The forensic sciences evolved and there is a new approach of all kinds of tracks. Their identification and gathering become activities that need both the forensic detective's experience and intuition and precision, accuracy and protection against contamination or alteration of the tracks.

Irregardless of their simplicity or complexity, the kits must address to the following needs:

- ▷ To exactly respond to the presumed activities
- ▷ To be easy to work with them
- ▷ To permit the maximum accurate exploitation of the tracks
- ▷ To allow the application of certain unique procedures
- ▷ To avoid the alteration of the tracks by using specific materials
- ▷ To avoid the contamination of the tracks
- ▷ To ensure the appropriate preservation of the tracks
- ▷ To be consistent with the specific legislation

- ▷ To ensure the technical independence of the ope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ield conditions
- ▷ To be easy to be filled up for the next forensic detectives
- ▷ To include the instructions necessary for work
- ▷ To have an acceptable price
- ▷ To correspond to the quality standards in the field.

5-1. Criteria for clasifying kits

a. after endowment

- ▷ simple
- ▷ complex

b. after the field of application

- ▷ specific
- ▷ mixed
- ▷ universal

c. after the technology used

- ▷ allow the alteration of the tracks by physical processes
- ▷ allow the alteration of the tracks by chemical processes
- ▷ allow the alteration of the tracks by mixed processes
- ▷ allow the alteration of the tracks by electronic means

d. after destination

- ▷ for fingerprints
- ▷ for tracks left by instruments, footwear and transportation means
- ▷ for biological tracks
- ▷ for fire arms tracks
- ▷ for metal tracks
- ▷ for fires and explosions tracks
- ▷ for taking the corpse fingerprints
- ▷ for traffic accidents
- ▷ for drug testing
- ▷ for chemical marks

e. after the using regime

- ▷ for long term using
- ▷ for short term using

5-2. Kits for taking the fingerprints

5-2-1. Patrol Kit

This kit is ideal for those police units whose workers are organized in patrols. The kit is accompanied by instructions.

Materials:

- ▷ black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adhesive band for gathering fingerprints;
- ▷ standard glass brush for taking the fingerprints;
- ▷ fingerprint cardboard;

- ▷ protection gloves;
- ▷ 203×196×90mm polimer box

5-2-2. Detective kit

The kit is compact, small, in a box, designed to rapidly search and gather the fingerprint. The kit includes:

- ▷ black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white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red-silver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translucent thin sheets with attached stand
- ▷ black thin sheets with attached stand;
- ▷ two natural hair brushes;
- ▷ 3 x magnifying glasses;
- ▷ 171×100×50mm box

5-2-3. Practitioner kit

It is considered to be a semiprofesional kit for special units. It contains instructions and includes the following materials:

- ▷ black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white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adhesive band for gathering fingerprints;
- ▷ translucent thin sheets with attached stand;
- ▷ white thin sheets with stand;
- ▷ black thin sheets with stand;
- ▷ two natural hair brushes;

- ▷ scissors;
- ▷ 3× magnifying glasses
- ▷ protection gloves
- ▷ 203×196×90 polymer box

5-2-4. The Scott Kit

This kit includes a great number of powders and thin sheets being designated to those police units that have a great number of crimes. Each and every kit has instructions.

The kit includes:

- ▷ black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white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silver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three natural hair brushes;
- ▷ translucent thin sheet with attached stand
- ▷ white thin sheets with attached stand;
- ▷ black thin sheets with attached stand;
- ▷ white thin sheet on rubber stand;
- ▷ black thin sheet on rubber stand;
- ▷ scissors;
- ▷ 3× magnifying glass;
- ▷ protection gloves;
- ▷ evidence bags

The kit is organized into a polymer bag.

5-2-5. Expert Kit

This kit is one of the most useful kits for searching, isolation and gathering of fingerprints. The kit offers to the forensic detectives almost all th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fingerprints and the entire equipment for their application.

The kit components allow the user to successfully identify and gather the tracks both in the field and laboratory.

The kit includes the following materials:

- ▷ black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white powder for taking fingerprints
- ▷ silver-black powder
- ▷ silver-grey powder
- ▷ safecracker silver-red powder
- ▷ black magnetic powder
- ▷ white magnetic powder
- ▷ silver magnetic powder
- ▷ silver-red powder
- ▷ magnetic brush
- ▷ cyanoacrylate packs
- ▷ iodine ampullas and applicators
- ▷ myhydrine spray
- ▷ silver nitrate spray
- ▷ vaporizer microparticles solution
- ▷ translucent thin sheets for taking fingerprints
- ▷ translucent band for taking fingerprints
- ▷ white and black thin sheets on rubber stand
- ▷ 3× magnifying glass
- ▷ flash light

- ▷ tape measure
- ▷ band for marking the evidence
- ▷ scissors
- ▷ photo ruller
- ▷ bloc-notes
- ▷ water recipient
- ▷ napkins for single use
- ▷ different bags for packing the evidence
- ▷ protection gloves
- ▷ special napkins for cleaning

The kit is organized in a 45×38×20cm plastic material bag.

5-2-6. Krimesite Imager Kit

The Imager Krimesite Kit uses the identification technology of ultraviolet radiations relected image known shortly under the name of RUVIS in order to identify the fingerprints that are not visible and are located on smooth surfaces without using any kind of powder chemical substances or steam treatment. This examination procedure is not affected by the surrounding light, that means that it can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during daylight or in darkness, outside or inside. The mechanism is built in order to amplify the reflected 254nm UV radiation and it is not influenced by other wave lengths.

By using this technology, one can very rapidly fiind fingerprints on the scene of crime, at any distances from the examined object, resulting into a rise of efficiency in searching the tracks. You can also avoid the situations in which the examination of certain surfaces could be neglected. The use of RUVIS technology has the advantage that the tracks are examined by means of an undistructive and uncorosive method. You have also the advantage that at the scene of crime the filling with powders or

chemical substances difficult to be cleaned up of objects, surfaces, bureaus or vehicles is avoided.

The Master RUVIS Complex includes 2 RUVIS equipments as follows:

- ▷ cyclop
- ▷ scan-n-fiind
- ▷ digital photo mechanisms
- ▷ digital printer

One of the RUVIS equipments is used by an examiner and the second one by an operator that records the cyclop system UV noticed images.

The kits equipped with bluemaxx light sources can als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kits that can be used in the fingerprint field. According to their power, they can be used on small or large areas. The maximum power for bluemaxx super is of 1,5 mil.candela (cd) which allows the examination of long surfaces in rooms or other places.

5-3. Other kit models

- ▷ kits for casts
- ▷ kits for electrostatic gathering of footwear tracks
- ▷ kits for microparticles gathering
- ▷ kits for fires searching
- ▷ kits for gathering fires and explosions tracks
- ▷ kits for marking (traps)
- ▷ kits for gathering fire arms and tracks
- ▷ kits for gathering metal tracks
- ▷ kits for used series
- ▷ kits for biological tracks

- ▷ kits for drugs detection
- ▷ kits for drawing
- ▷ kits for field marking
- ▷ kits for fingerprints

Besides all the above mentioned kits, the manufacturers of forensic equipment deliver special sets of materials designed to gather biological tracks in cases that involve sexual life related crimes, sets for gathering the tracks that will be MEB analyzed, sets for gathering the field tracks and evidences for DNA analyses.

Without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clasification to be an exhaustive one or the listing of the kits to be completed, we can state that we assist to a clear specialization of the field intervention means and that these means are of a great variety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crimes and of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of the tracks.

中國의 民·警協力治安體制 「治安保衛委員會(治保會)」에 대한 고찰

■ 金 燦 源*

국가의 경찰력에 일방적으로 치안 유지를 의존하는 시대는 과거 시민의 힘이 미약했던 시절의 경찰 체제로 이제는 그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인권 개념의 급격한 신장과 민간 경비업 발달, 각종 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공적인 질서유지는 민·경 협력치안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경찰체제도 최근 우리 경찰이 도입한 '순찰지구대'라는 지역경찰제와 같이 최대한 시민과 같이 협력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민·경 협력체제가 中國에서는 '治安保衛委員會'라는 제도로 오래 전부터 시행중에 있어 가까운 외국의 치안시책 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I. 「治安保衛委員會」의 성립과 발전

중국의 민·경협력체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협력해서 운영중인 체제가 바로, 「治安保衛委員會(이하 '治保會')」이다. 治保會는 중국이 최일선의 기초자치단체와 경찰기관이 직접 지도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여 조직한 자치조직으로 사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四防(간첩, 도둑, 화재, 사회안전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비전문·직업적 민간자율조직으로서의 治保會는 도시와 농촌은 물론, 기업체나 학교 등 기관 단위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중국 경찰의 치안유지능력을 보완해주는 가장 유력한 민간치안활동의 협력조직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治保會는 신해혁명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29년, 중국공산당이 공산혁명을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장

계급 투쟁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혁명에 방해가 되는 반혁명 세력과 유사 분류의 범죄자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성립된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건국 초기의 계급간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국민당을 대만으로 축출한 뒤, 다시 대륙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정세와 함께 미국 등 유엔군이 개입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부의 질서유지를 강화하면서 治保會 조직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중요 정보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첩보활동과 선전, 선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이에 협조하는 국민당의 대륙내 잔당 인원들에 대한 색출과 방첩활동의 목적으로 그 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맞는다.

또한, 중국의 대중적인 시민활동이 공산 혁명의 심화는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퇴치하는 작용에도 治保會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 毛澤東(마오쩌둥)도 지방정부의 반혁명활동과 숙청작업, 방첩을 지시하면서 국가보위 정책과 병행하여 사회질서유지의 막중한 책임을 治保會에 일임하면서 체제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된다. 이후 治保會는 30여년간의 부단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966년에서 1976년간의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완전히 그 기능이 정지되는 과정도 겪지만, 1982년 수정, 반포된〈中華人民共和國憲法〉제111조에 '도시와 농촌에 있어 거주민의

거주지역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초단위의 대중적인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동급의 기초단위 정부조직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들간의 이해조정, 치안질서의 유지, 공공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단위의 공공사무와 공익적인 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규를 조정·화해시키며, 사회치안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기초지방정부에 대하여 주민과 대중의 의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사항을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治保會가 각 거주지역, 사업단위별로 설치된다.

II. 治保會의 설치와 구성

1. 治保會의 설치 근거

治保會의 설치 근거는 〈中華人民共和國憲法〉제111조의 규정이다. 헌법상 명문으로 '도시와 농촌에 있어 거주민의 거주지역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초단위의 대중적인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과 위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동급의 기초단위 정부조직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는 법률

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들간의 이해조정, 치안질서의 유지, 공공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단위의 공공사무와 공익적인 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규를 조정·화해시키며, 사회치안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기초지방정부에 대하여 주민과 대중의 의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사항을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治保會가 각 거주지역, 사업단위별로 설치된다.

농촌에서는 '촌' 단위로, 도시에서는 '주민위원회' 단위별로 설치되고 공장이나 사업장, 학교, 광산 등의 사업단위별로도 治保會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단위별, 기초정부조직과 경찰기관의 지도와 조정을 받게 된다.

2. 治保會의 구성¹⁾

治保會는 주임 1인과 부주임 1인 내지 2인을 두며, 3인, 5인, 7인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11인을 초과할 수 없다. 治保會의 위원 숫자는 소속 단위의 구성원 또는 주민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부 임무에 따른 분임조(小組)를 둘 수 있다. 주민위원회 등의 기구는 부락이나 생활거주 단위별로 治保會 小組를 두어 자치조직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주민위원회의

부락단위 주민위원회의 主任이 治保會의 主任을 겸임,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의 선임 절차는 위원 후보에 대한 당과 기초행정단위 또는 기업, 단위별 타협과 조정이 우선 이루어지고, 기초행정기관 또는 경찰

기관의 심사를 거쳐 후보가 결정되면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발하여 선임된다. 治保會의 위원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한 방식으로 매년 1회 선출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사임하거나 직을 잃지 않으며 수시로 보선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규정도 있다.

治保會의 설치 단위는 기초지방행정단위에 상응한 주민위원회, 사업 단위이다. 세부적인 小組와 단위별 小組를 더 둘 수 있으나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治保會는 기초지방행정단위별로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하의 체계를 갖추거나 병렬적인 관계로 조직을 확장하여 유지하는 경우도 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 단위별로 대응 기초지방행정기관과 연계하면서 운용되고 있다.

治保會의 구성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대원칙으로 「기초행정단위, 경찰기관의 지도」의 원칙이 있다. 즉, 治保會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지도를 따르거나 기업 등의 사업단위 행정조직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동급의 경찰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조정을 받으며 근무한다고 규정하여 기초행정단위와 경찰의 철저한

1) 이하는 〈村民委員會組織法〉, 〈治安保衛委員會組織條例〉의 규정에 의한 조직 구성 원칙을 해설한 내용임.

통제와 지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Ⅲ. 治保會의 특성과 임무

1. 治保會의 특성

치보회는 중국 헌법에서 명시한 대중 자치조직이자 중국공산당과 기초 행정정부가 동원, 조직하는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경찰조직 역시 군중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중국경찰의 조직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철저히 대중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治保會의 성질은 대중을 위한 조직으로 다음의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1) 비직업적인 주민 자치조직의 성격을 띤다.

주민의 광범위한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조직으로써 자기 자신의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유지함을 목표로 결성되며, 주민들 스스로 다스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직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의한 선출과정을 거친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되는 공적인 경찰조직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며, 지역이나 직장에 속한 주민들로 구성된다. 사회조직으로서의 사회성을 가지며, 헌법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정부의 치안정책과 주민 안전활동 관련 정책도 이러한 대중조직을 통해 전달되고 집행되기도 한다.

2) 자치성을 가진 군중조직이다.

治保會 업무는 '모두의 일은 다같이 해야 한다(大家事大家辦)'는 정신의 실천이다. 대중이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리자는 원리로 운영된다. 상급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결성되거나 조직되지 않는다.

또한, 治保會의 사회질서 유지 방법도 국가의 법률, 정책 및 주민이 참여한 주민위원회 등의 치안질서 관련 규정을 참고로 하여 자치적인 실정에 맞춘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관할 지역 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질서와 치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최일선의 경찰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방법대책과 대중 치안정책, 순찰과 방범진단 등의 활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3) 治保會는 반드시 경찰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治保會의 구성 목표는 사회치안 질서의 유지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적인 권력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므로 구성단위가 속한 행정단위나 경찰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업무 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과의 긴밀한 유대는 治保會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중국

경찰의 최일선 기관인 파출소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 장악하고 지도해 나가야 하고, 治保會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 업무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치안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治保會의 임무는 치안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

治保會는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기관의 지도와 조정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한다. 경찰업무에 있어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역량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四防(절도, 화재, 파괴,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治保會의 임무는 범죄인의 교정교육과 옥외 실행 선고자의 감독과 감시활동 등에도 수행하면서 경찰의 치안유지의 실질적인 보조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治保會의 임무

治保會는 주(촌)민위원회, 기업과 사업체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등의 행정기구가 지도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원으로 결성된 조직이지만,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그 임무가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1952. 6. 공포 시행된 [治安保衛委員會暫行組織條例] 제5조의 규정에는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① 군중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상시 방범, 방첩 기능은 물론

반혁명 활동의 선전선동을 퇴치하고, ② 주민이 정부와 경찰기관에 협조하여 범죄자의 검거 및 범죄활동의 감시, 불순분자의 감독과 국가위해를 위한 파괴활동을 사전에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③ 국가위해 사범의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교정활동으로 국가를 위해 전향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하며, ④ 군중에 의한 방첩활동과 대중적인 애국정신을 전파하여 사회치안의 유지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임무가 주요 내용이다.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 '文化大革命' 전까지는 治保會의 주요 임무는 정부의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기 위한 군중의 동원, '四防'을 통한 치안질서 유지, 네 분류의 불순분자(지주, 부농, 반혁명, 악질성격)를 교정하는 활동이었고, 10년간의 '文化大革命' 기간에는 경찰기관과 함께 일체의 활동과 조직이 정지되고 철저히 비판받는 시련을 겪는다.

이후, 治保會는 1983년 공안부가 [治安保衛委員會組織條例]를 수정하면서 새로이 그 임무를 수정·보완한다. ①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방첩, 방도, 방화, 방치안재해의 '四防' 업무, ② 경찰기관에 협력하여 사회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요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와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는 일, ③ 기업과 생산현장, 학교와 거리, 농촌 부락과 가정의 세대주는 경미한 범죄활동에 대한 교정(소년원, 노동교양소에서 미교정 출소된 자를 포함)을 도와주는 일, ④ 경찰에 협력하여 경범죄처벌사범의 단속과 예방, ⑤ 범죄 및 국가위해 사범에 대한 신고체제와

수배자, 탈옥자에 대한 검거, 현행범등에 대하여 체포와 인계활동, 민사분규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통한 범죄예방홍보, ⑥ 발생된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협력체제로 현장의 보전과 수사 협력자로서의 역할, ⑦ 경찰기관에 협력하여 거주감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주거감시와 자격정지형벌 및 보석·가석방 등으로 석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감시감독자의 역할, ⑧ 주민들에 대한 선전과 교육으로 준법, 도덕 교육을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보전, ⑨ 경찰기관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경찰업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치안모니터 조직으로서의 역할 등 9가지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治保會의 활동과 임무에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정치 체제개혁을 통해 주민들과 대중이 참여하는 조직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그 역할을 직접 범죄인과 불순분자에 대한 작용에서 선전과 범죄예방 홍보 활동 위주로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효율성을 강조하여 주민들에 대한 준법의식, 법치주의 함양의 선전·홍보활동에 治保會를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1988. 9. 30. 중국 공안부는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도시·농촌 治保會 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治保會의 기본 임무를 ① 대중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방법 및 준법의식을 함양, ②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교정과 교육, 선도활동, ③ 경찰에 협력하여 범죄현장을 보전하고 범죄해결 협력자로서의 역할, ④ 관련부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민사·사회 문제의 분규를 사전에 조정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도우미, ⑤ 정부와 경찰기관에 대한 정책과 치안모니터로서의 의견제시와 요구사항의 전달로 규정하였다.

IV. 治保會의 역할과 근무체제

1. 治保會의 역할

40여년간 治保會는 그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예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다음 세가지 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 경찰과 시민과의 유대관계의 중요 고리와 교량으로서의 역할

시민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생활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이들로 구성된 治保會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밀접한 관계는 治保會의 기초이자 성립의 전제조건이 될 만큼 시민과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런 유대관계가 또한 사회의 방범안전장치의 역할로 순환되고 있다. 경찰은 治保會라는 교량을 통해 주민의 고뇌와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통로, 치안모니터로서 활용하고 있다.

2) 주민들의 단결과 참여 유도 역할

治保會 활동으로 주민들은 더욱 단결된 이웃으로 화합을 이루고, 민사사안 등 각종 분규를 조정하고 초기에 화해를 시키는 역할로서의 작용도 하고 있다.

3)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의 가장 유력한 도움 작용

물적인, 인적인 경찰 작용의 도우미 작용을 하고 각종 치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2. 治保會의 근무체제

治保會의 근무는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진행된다. 근무방식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례학습 체제

治保會는 중대한 문제 발생에 따라 열리는 회의와 배치 외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 1~2회의 정기적인 사례학습회의를 갖는다. 사례학습회의는 주임 또는 부주임이 주재하며, 전체위원이 참석한다.

등급 경찰기관과의 연석회의의 형태로 진행되며, 주요 치안상황과 각종 법률, 직무관련 지식의 교육, 사례의 분석과 토론, 경험에 대한

공유 등을 상호교류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결과를 시험평가로 확인하기도 한다.

2) 안전검사(재난과 범죄예방) 근무체제

안전검사 근무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시 대처하는 근무 체제로 범죄예방과 재난의 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중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안전검사 근무는 정기적인 방법 진단 형식과 수시로 진행되는 진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정기 안전검사는 중요 국경일과 명절을 전후해서 실시되고, 수시 안전검사는 평시 순찰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주요 진단 대상은 위험성 화약물질과 재난이 예상되는 취약장소, 건물 등에 대하여 실시된다. 안전 검사는 治保會의 주요 임무가 '四防' 이므로 주 임무를 실시하는 핵심적인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

범죄와 화재 예방, 재난과 재해사고 등에 예방을 위해 방재 시스템을 확인 검사하고, 관리체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조치를 통해 범죄나 재난으로부터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근무체제이다.

3)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 체제

治保會는 근무 결과에 대한 개선과 문제점의 시정체제를 갖고 근무가 이루어진다. 수시로 기초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의 업무에 대한 治保會의 근무내용을 결산하고, 이를 통한

治保會의 업무내용을 부단히 조정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경우 1개월에 1~2회 정도 진행하면서 治保會의 근무내용을 조정하고 또한 그 결과를 보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내어 다음 근무체제에 반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결과는 반기 또는 1년에 총결산하여 주민위원회에 보고하고 治保會의 근무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주민들에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방법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治保會의 근무방법과 수단

治保會는 기초 행정단위와 경찰기관의 철저한 지도에 의해 대중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가지며 각 단위별 안전 전담 책임제의 형식으로 근무가 실시된다. 이러한 근무의 주요 수단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1) 행동에 대한 규제 수단

▷ 권고

현재 진행되는 위법한 경범행위자에 대하여 위법한 행동을 정지시키고 법규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고 제지하는 수단.

▷ 제지

현재 진행중인 위법한 경범행위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과감히 진행되는 정지조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두에 의한 정지 명령과 함께 행위에 대한 유형적인 강제 정지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지조치 이후에는 계기(장구)의 사용이 있을 수 있고 불응하는 위법행위자는 즉시 경찰기관으로 연행하여 사법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즉시적인 행위의 정지 조치와 함께 경찰기관에 연행됨을 고지하며 행위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 연행

범죄를 진행중인 현행범 또는 반혁명 사범, 수배되어 체포가 진행중인 도주범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경찰기관에 사법처리하기 위해 검거하여 인계하는 수단이다.

▷ 적발(고발과 제보)

경찰기관의 범죄처리에 대한 협조의 기본 수단으로 일체의 범죄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없을 경우 경찰기관에 고발하고 수사에 협력한다. 적발(고발과 제보)는 범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자나 범인의 가족이 범인을 검거한 경우도 될 수 있다. 治保會와 경찰기관은 이런 적발자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주며, 신원에 대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2) 행동에 대한 간접적 조사와 관찰

▷ 조사

治保會가 반혁명 또는 형사사범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혁명혐의가 있거나 절도, 강도 등의 혐의, 집단폭력 및 음란행위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방문 및 관찰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 감시

경찰기관에 의해 형사우범자나 사회치안의 우려사범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 관찰 활동이다.

▷ 감독

거주지 감시 처분(管制-형사처분의 일종)이나 가석방 선고, 옥외 형집행 처분을 받은 자나 정치권리박탈(자격 정지형) 처분을 받은 이들을 감독하고 사회에서의 현지 교정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단.

▷ 고찰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하여 법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감독, 감시활동과 교정상황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살피는 활동으로 고찰 결과에 따른 교육과 적절한 관리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V. 治保會 고찰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우리 경찰은 작년 8월부터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순찰지구대 형식의 지역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지역경찰제의 실시 배경에는 범죄에는 강력한 대응과 시민들에게는 친절한 봉사로서 다가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자하는 참여 치안의 요구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경찰 협력 단체들은 1999년 경찰 대개혁으로 활동이 미온적으로 변화하여 주민들로부터 경찰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찰제를 도입하였고 민원담당관을 통한 치안 홍보와 협력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체제에서의 새로운 협력치안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정〉에는 순찰 지구대 단위별로 생활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치안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협력조직은 세계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지역 사회경찰활동의 추세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에서 결성되고 운영되는 治安保衛委員會(治保會)는 중국의 건국 시기부터 결성된 오랜 전통을 가진 민·경협력치안 자치조직으로 그 운영과 개선, 발전과정 및 규정 등을 타산 지식으로 삼아 우리 경찰이 협력치안 활동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데올로기의 차이점과 국가 운영에

있어 그 운영 방향이 달라한다는 점과 철저한 통제와 국가 및 당으로부터 주민을 장악해온 중국의 국가 연혁에 따라 많은 차이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경협력치안체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治保會 운영은 그 규정과 발전과정이 정치적인 체제가 다른 점 외에 우리와 같은 오랜 유교전통 문화의 바탕위에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민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治保會의 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가 가진 장점을 살려 우리의 참여치안 단체나 민·경협력치안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治保會는 우리나라의 현행 생활안전협의회와는 달리 국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설정해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의 조화와 협력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 경찰청 훈령인<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 관한규정>에 의한 협력치안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嚴勵 李昭 王智民 主編, 中國公安業務全書,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6.
- 惠生武, 警察法論綱,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1.
-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 編,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令集,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6. 10.
- 梅德衡 傅躍建, 豫防犯罪對策,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1995. 9.
- 甄岳剛 管曙光, 公安內勤工作手冊,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7. 7.

動向

JAPPAT의 수상사고(受傷事故)에 관한 고찰*

■ 황영구**

I. 들어가며

일본경찰체력능력검사(JAPPAT)는 2002년 10월 25일에 일본 경찰대학교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03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도입된 JAPPAT의 원칙은 전 경찰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¹⁾

현재, 각 현(縣)에 대해 경찰체력검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상사고(受傷事故)방지에 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상사고(受傷事故)가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하고, 2003년 7월말 일까지 경찰청이 각 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JAPPAT의 본 실시 중에 있어서 수상사고(受傷事故)는 3건이었다.

또, 경찰체력검정 등의 실시설명회(2002년 10월 25일)로부터 2003년 7월말까지의 9개월간에 있어서, 본 실시만이 아니고 시범 실시 및 훈련의 일환으로서 실시한 것을 합하여, JAPPAT에 대한 모든 수상사고에 1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덧붙여서 2001년 중에 있어서의 전 경찰관의 체육·술과(術科)활동 중의 수상자(受傷者)는 2,076명이다(2003년 3월 24일 : 술과(術科)교양분과회의 보고에 의해). 이러한 결과를 보면, 예상보다도 매우 적은 수상

* 本稿는 日本「警察學論集」第56卷 第12號에 실린 論文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치안정책연구 제17호에 소개한「일본경찰의 JAPT제도를 9개월간 실시한 이후에 나타난 수상사고(受傷事故)에 대한 내용임.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 황영구, 치안정책연구 제17호, 2003 p.274.

건수(受傷件數)이지만, 수상건수를 제로(Zero)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체육지도자를 시작으로 한 JAPPAT에 관여하는 사람의 직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보고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일본경찰체력검정(JAPPAT)제도를 2002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동안 실시 중에서 일어난 수상사고(受傷事故)에 대한 현황과 원인 그리고 사고방지대책을 고찰해 보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시예정인 있는 체력검정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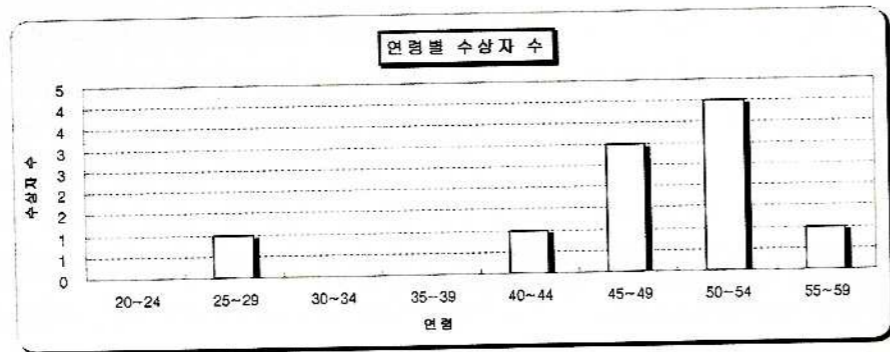
II. JAPPAT 수상사고(受傷事故)의 현황

아래의 <표1>과 <그림1>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7월말 일까지의 JAPPAT에 관한 모든 수상 사고의 발생 현황을 일본경찰청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JAPPAT의 수상사고(受傷事故)의 현황

번호	성별	연령	신장	체중	BMI	단계	동작 등	수상부위 등	JAPPAT의 설정
①	남	41	172	77	26	1	점프	오른쪽아킬레스힘줄단열	훈련의 일환
②	남	54	174	74	24	1	점프착지	오른쪽아킬레스힘줄단열	훈련의 일환
③	남	51				2	점프착지	왼쪽아킬레스힘줄단열	시행실시
④	남	51	165	80	29	2	점프착지	왼쪽아킬레스힘줄단열	본 실시
⑤	남	47	165	69	25	2	점프착지	왼쪽아킬레스힘줄단열	본 실시
⑥	남	57	168	68	24	3	점프	왼쪽아킬레스힘줄단열	시행실시
⑦	남	25	171	62	21	3(골인직전)	우쇄골 잔골(右鎖骨ひび)	훈련의 일환	
⑧	남	45	171	58	20	3(골인직전)	런닝(ランニング)	오른쪽아킬레스 힘줄단열	본 실시
⑨	남	52	179	85	27	1	턴(ターン)	오른쪽근육심반대손상	훈련의 일환
⑩	여	47	158	53	21		점프착지	왼쪽아킬레스힘줄단열착지	호기심에 의해

<그림 1> 연령별 수상자수



위 표에서 전 수상자수는 10명이고, 그 내용은 남성경찰관이 9명, 여성 일반직원이 1명이다. 또 <그림 1>에서 보면 25세대가 1명, 40세대가 4명, 50세대가 5명이었다.

단계별 수상자수는 제1단계가 3명, 제2단계가 3명, 제3단계 3명이 되고 있다. 제3단계의 3명중 2명은 골인 직전이었다.²⁾

수상(受傷)시의 동작으로서는 경장(警杖)³⁾을 넘기 위해서 「점프해 착지했을 때」가 5명, 「점프했을 때」가 2명이 되고 있다.

수상부위 등으로서는 왼쪽 아킬레스힘줄단열 5명과 오른쪽 아킬레스힘줄단열 3명으로, 좌우 아킬레스힘줄단열이 8명이며,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JAPPAT의 실시 설정으로서는, 검정의 본실시중이 3명, 시행 실시중이 2명이고, 트레이닝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어진 현황이 4명이었다.

III. JAPPAT 수상사고(受傷事故)의 원인분석

1. 사례1

이하에서 설명한 수상사고(受傷事故) 4건은, 본인·측정책임자 및 보조자가 개입하고 있는 인위적인 영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이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입회책임자·측정책임자 및 보조자 등에 대해 강습회·지도 등의 실시에 의해 책임내용과 그 직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러한 원인의 수상사고(受傷事故)는 제로(Zero)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표 1>의 ⑩ 사례

JAPPAT 실시시에, 혈염(血壓)측정의 보조원인 여성(일반직원)이 호기심으로부터 경장(警杖)을 뛰어 넘어 수상(受傷)한 것이다. 특수한 경우이지만, 입회책임자나 측정책임자 등이 제지할 수가 없다는 것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례이다.

2) 1단계~3단계에 대한 설명은 치안정책연구 제17호 p. 278~280 참고.

3) 가로막대 뛰어넘기,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경장(警杖)에 대한 그림은 치안정책연구 제17호 p.277 <그림 1> 참조

2) <표 1>의 ⑨ 사례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유도 조교의 남성이 훈련의 일환으로서 실시한 것이다. 유도의 수상사고(受傷事故)는 오른쪽 무릎이 가장 많고, 훈련시부터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던 가능성 혹은, 이른바「고상(古傷)」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테이핑(Taping)·서포트(Supporter) 등의 보강을 한 후에 실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표 1>의 ⑦ 과 ⑧ 사례

어느 쪽에도 공통되는 부분은, 골인 직전에 수상(受傷)하고 있는 경우이다. ⑦의 경우에는 훈련의 일환으로서 실시 중에 굴러 넘어져 쇠골(鎖骨)을 강하게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골인 직전에 있어서의 측정책임자 및 보조자의 책무는 중요하고, 실제로 서포트(Supporter) 체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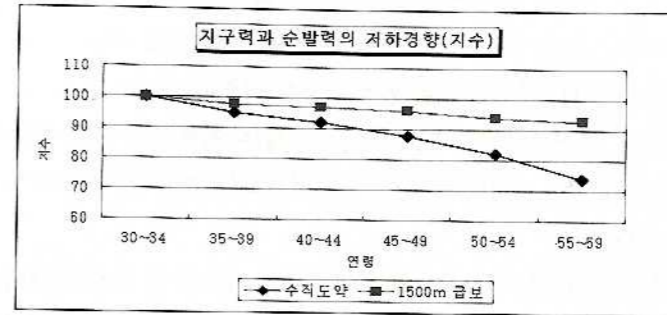
2. 사례2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수상사고(受傷事故) 4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원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①~⑥사례는 제1단계에서 2건, 제2단계에서 3건, 제3단계에서 1건과 각 단계에 차이가 있지만, 경장(警杖)을 넘기 위해서 「점프했을 때 2건」 및 「점프해 착지했을 때 4건」이 일어나고 있어 모두가 아킬레스힘줄단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6건(6명)에 있어서의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50세(40세대가 2명, 50세대가 4명)이었다.

이상으로 보아 「왜, 인위적인 영향이 큰 사례를 제외한, JAPPAT 실시 중의 수상사고의 모두가 점프에 관계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때에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음의 문부성체육국(文部省體育局)의 그래프이다. <그림 2>의 개요는 1997년도 체력·운동능력조사보고서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나이가 많을수록 수반하는 체력의 저하경향이 체력의 요소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순발력의 지표로서 실시되었던 「수직도약」은, 40세 이후에 저하경향이 가속되는 것을 들 수 있다.⁴⁾ 이것으로부터 「수직도약」이라고 하는 점프하는 능력은, 나이가 많을수록 수반하는 저하경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노년자에게 있어 「매우 약점의 운동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지구력과 순발력의 저하경향(지수)⁵⁾



체력의 요소별의 나이에 수반하는 변화를 보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55~59세에 있어서 지구력(급보)은 30~34세의 93%이고, 비교적 완만한 저하 경향을 나타내지만, 순발력(수직도약)은 74%이며, 저하 경향이 지구력에 비해 급격하다. (주) 30~34세대를 100으로 한 지수

즉, JAPPAT의 경장(警杖)을 「점프 했을 때」 및 「점프해 착지했을 때」의 동작은 중노년층의 경찰관에 있어 약점의 운동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 그 동작에 신체가 견딜 수 없는 경우에 아킬레스힘줄단열이라고 하는 수상사고(受傷事故)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체포술·유도 및 검도의 훈련 중에 있어서의 수상사고 중에도, 똑 같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많은 것인지도 모른다.

IV. JAPPAT 수상사고(受傷事故)의 방지대책

JAPPAT는 검정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훈련의 일환으로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향은 향후에도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측정책임자가 받는 「체력검정 등의 실시에 관한 연수 등」을 학교교관이나 기동대 및 체육·술과(術科)의 지도자 등에도 수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훈련시에 있어서 지도자는 측정책임자 등의 임무를 재확인함과 함께 보조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골인 직전의 수상사고(受傷事故)에 관해서는 측정책임자·보조자의 임무내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훈련시의 지도자나 검정시의 입회책임자·측정책임자 등(이하, JAPPAT지도자라고 한다)은

4) 1997년도 체력·운동능력조사보고서(1998년10월 : 문부성체육국), p. 21.

5) 1997년도 체력·운동능력조사보고서(1998년 10월 : 문부성체육국) p.21, 22에 의해 문부성이 「신체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수직도약의 데이터는 이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외국 경찰 동향 3

JAPPAT는「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해, 포착해 제압한다.」라고 말한 직무집행을 조사·연구해 그것을 모의동작으로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수상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경장(警杖)을 뛰어 넘는 동작을 없앨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장(警杖)을 「점프 했을 때」 및 「점프해 착지했을 때」에, 아킬레스건을 수상하는 사례가 많은 일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JAPPAT지도자는 경장(警杖)을 뛰어 넘는 동작은 점프하지 않고 넘어도 괜찮은 것을 확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노년자에게 있어서는 점프하는 것 자체가 신체에 대해 매우 힘든 동작인 것을 이해시킨다.

JAPPAT지도자는 JAPPAT의 실시상의 유의사항에 기초를 둔 순서에 의해 수검자격이 있는 경찰관을 가려 엄정하게 실시하여 해당하는 경찰관에게만 훈련 및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호기심에 의해 일반직원이 실시하는 것은 일반직원이 권총을 쓰는 것과 같은 레벨이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JAPPAT지도자는 발목·아킬레스건·정강이(下腿)·무릎에 큰 부담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해시켜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는 부위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서포트(Supporter)·테이핑(Taping) 등의 적합한 보강수단을 실시하여 훈련 및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황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맨발이나 체포술 슈유즈(Shoes)보다도, 쿠션성이 뛰어나 뒤꿈치와 발목을 고정할 수 있는 훈련 슈유즈(Shoes)(농구·테니스용 등)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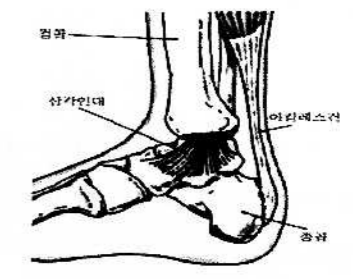
V.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 예

JAPPAT를 실시하기 전에는 JAPPAT 실시 메뉴얼(Manual)에서 정하는 준비운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의 수상사고(受傷事故)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스트레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요 포인트

아킬레스건은 우리 발뒤꿈치(종골)에 있는 힘줄이다. 발뒤꿈치에 연결되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발뒤꿈치뼈(Heel bone)와 이어 주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거나 뛸 수 있게 해 준다.

주로 걷기 시작할 때나 똑바로 걸을 때, 또 달릴 때나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아리의 근육이 오므라들면 아킬레스건에 연결되어 있는 발뒤꿈치가 당겨지면서 발의 앞부분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지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걷거나 달릴 수 있게 해준다. 즉, 달리기 때에 필요한 건(腱)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아킬레스건이다.



〈그림 3〉 아킬레스 건

2. 스트레칭 예

	<p>JAPPAT실시 메뉴얼(Manual) : 「한 명의 스트레칭」의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팔을 무릎에 대어 앞발에 체중을 건다. ㉡ 앞발의 뒤꿈치를 마루로부터 떼어 놓지 않는다. ㉢ 상체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면 보다 효과적이다.
	<p>JAPPAT실시 메뉴얼(Manual) : 「한 명의 스트레칭」의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양팔은 허벅지에 둔다. ㉡ 등을 펴 양쪽 발꿈치에 체중을 가한다.
	<p>JAPPAT실시 메뉴얼(Manual) : 「한 명의 스트레칭」의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발을 전후로 벌려, 앞발의 발끝을 잡아 당긴다. ㉡ 손을 더하는 위치는 발끝·발목·무릎에 있지 않아도 좋다. ㉢ 무리하게, 발끝을 손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p>JAPPAT실시 메뉴얼(Manual) : 「한 명의 스트레칭」의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을 벽에 기대고 선다. 이 때 왼발을 몸통 뒤쪽으로 하고 오른발을 몸통 앞으로 향하게 한다. ㉡ 뒷발의 뒤꿈치를 마루로부터 떼어 놓지 않는다. ㉢ 뒷발의 무릎을 굽히면 보다 효과적이다.

VI. 마치며

이번 자료로부터 독해한 것은, 「수상자의 연령은 50세를 중심으로 한 중노년층이고, 동작으로서는 경장(警杖)을 넘으려고「점프 했을 때」및「점프해 착지했을 때」에 아킬레스건을 단열한다.」고 말한 수상패턴이 매우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JAPPAT 시행실시의 단계로부터 얻었던 수상사고(受傷事故)였지만 연령·동작·수상부위에 있어서 이정도 비슷한 수상패턴이 겹친다는 것은 상상을 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시행실시에는 많이 보여진 골인 직전에서의 수상사고(受傷事故)가 적었다. 이것은 경찰체력검정 등의 실시설명회(2002년 10월 25일)를 시작으로 각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에 있어서 개최되었던, 입회책임자·측정책임자의 연수 등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증거이고, 각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 담당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이번 제시한 수상사고(受傷事故)의 방지대책은 지금까지의 각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이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JAPPAT실시에 있어서의 안전대책을 계속한데다가 훈련시의 지도자나 검정시의 입회책임자·측정책임자 등이 보다 한층 주의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금년의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JAPPAT를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본인·측정책임자 및 보조자에 관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수상사고(受傷事故)는 확실하게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훈련시의 지도자나 검정시의 입회책임자·측정책임자 등은 이번의 수상사고(受傷事故)의 방지대책을 참고하여 수상사고(受傷事故)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 JAPPAT가 실제의 직무집행 중의 추적·제압과 같은 행위인 것을 수검자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치안시책자료

- ❶ 미국 FBI의 종합DNA색인시스템(CODIS) / 백창현
- ❷ 경찰체포·호신술의 새로운 방안 모색 / 김학원·강국선
- ❸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남재성
- ❹ 경찰 ITS 추진현황 및 제언 / 정초영

施策

미국 FBI의 종합DNA색인시스템(CODIS)

■ 백 창 현*

I. 들어가며

1984년 영국의 제프리스(Jeffreys, A.)에 의해 DNA 지문(DNA Fingerprint) 분석법이 개발된 이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찍이 DNA를 범죄 수사에 이용해 왔다. 범죄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관련 증거물의 DNA형과 용의자의 그것과의 대조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그 결과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리지웨이(Ridgway, G. L., 일명 '그린강 살인마')를 체포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DNA를 활용한 수사의 덕분이었다.

그의 타액에서 나온 DNA와 희생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의 DNA를 대조한 것이다(유신모, 2004). 개인마다 지문이 다르듯 DNA

구조 역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한 DNA 감식은 지문 감식과 더불어 개인의 식별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0(zero)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범죄자 등의 DNA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유전자자료은행의 설치)해 놓고 그것을 전산망으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과 범인 검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소속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연방수사국)가 가동하고 있는 종합DNA색인시스템(CODIS, Combined DNA Index System)이 유명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Home Affair) 소속 법과학연구소(FSS, Forensic Science Service)가 국립DNA데이터베이스(The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National DNA Database)를 가동하고 있다(한면수, 2003, pp. 208-209; FSS, 2004).

여기서는 미국 FBI에서 운영하고 있는 CODIS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은 FBI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 정보(FBI, 2004; FBI, 2000a; FBI, 2000b)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번역·재구성·보충한 것이다.

II. CODIS의 의의와 설립 배경

FBI 연구소(The FBI Laboratory)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DNA색인시스템(CODIS, Combined DNA Index System)은 강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미국 연방(Federal)·주(State)·지방(Local)의 범죄연구소들이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자료와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들의 DNA 자료 등을 온라인 상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저장·교환·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동화한 전기통신 시스템이다.

CODIS는 1990년에 14개 주와 지방 연구소의 참여 아래 최초로 시작된 프로젝트

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DNA 감정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각 주들은 유죄 입증 범죄자들의 혈액 샘플을 수집·분석하여 그 DNA 정보를 주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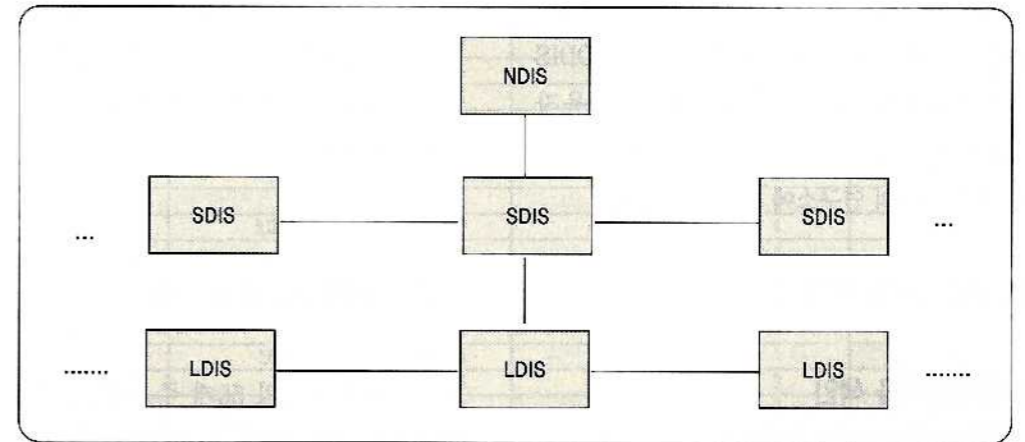
1991년에 FBI 연구소는 주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정의(Definition), 접근(Access), 공개(Disclosure), 일치(Compatibility), 삭제(Expungement), 허가 받지 않은 유출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Unauthorized Disclosure) 등에 관한 조항들을 추천함으로써 입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1994년에 제정된 DNA감식법(The DNA Identification Act)¹⁾은 FBI로 하여금 범집행 목적을 위한 국가적 DNA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10월에는 국가DNA색인시스템(NDIS, National DNA Index System)이 가동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50개의 모든 주가 주 DNA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입법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성범죄자를 비롯한 중범죄인들로부터 생물학적 샘플들을 채취하여 그 DNA형을 분석한 후 COD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III. CODIS의 구조와 운영

CODIS는 3개의 계층화된 단계-국가(National), 주(State), 지방(Local)-로 분류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 중 국가DNA 색인시스템(NDIS, National DNA Index System)은 CODIS 중 최상위 단계로서 연구소들이 전 국가적 범위에서 DNA 정보를 상호 교환·대조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DNA 색인시스템(SDIS, State DNA Index System)은 주 단위 내에서 DNA 정보를 상호 교환·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DNA색인시스템(LDIS, Local DNA Index System)은 지방 단위 내에서 가능하다. 모든 DNA 정보는 LDIS에서 시작하여 SDIS를 거쳐 NDIS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계층화된 구조는 각 주와 지방으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 CODIS의 구조

NDIS의 운영과 검색은 FBI 연구소가 담당한다. FBI 연구소는 법의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완비된 연구소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연방·주·지방의 범집행기관들을 위해 무상으로 관련 증거를 분석해주고 그 결과를 전문감정인의 자격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준다.

SDIS는 DNA 분석을 수행하는 주 단위의 범죄연구소들이, LDIS는 지방 단위의 범죄연구소들이 각각 그 운영과 검색을 담당하고 있다.

주와 지방의 범집행기관들은 해당 사건이 연방 차원의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FBI 연구소에 NDIS 검색을 의뢰하게 된다.

1) 품질 보증과 능력 테스트 기준(Quality Assurance and Proficiency Testing Standards), 범집행기관간 DNA 감식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색인(Index to Facilitate Law Enforcement Exchang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세출의 승인(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보조금의 승인(Authorization of Grants), 일정한 연방 범죄자의 DNA 감식 정보에 대한 수집과 사용(Collection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rom Certain Federal Offenders), 일정한 컬럼비아 지역 범죄자의 DNA 감식 정보에 대한 수집과 사용(Collection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rom Certain District of Columbia Offenders), 석방자에 대한 일반적 조건(Conditions of Release Generally),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Privacy Protection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NDIS를 통해 DNA 일치자를 찾아내게 되면 FBI는 주와 지방의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주고 사건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통지는 관련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기적으로 이루어진다.

SDIS와 LDIS를 운영하고 있는 각 주와 지방의 범죄연구소들이 NDIS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DNA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독자적인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FBI는 DNA 분석을 수행하는 주와 지방의 모든 법집행 관련 연구소에 무상으로 CODIS 소프트웨어를 제공-설치, 교육, 사용자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CODIS는 170여개 이상의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다.

IV. CODIS의 색인 분류

1. 현장증거물 색인 (The Forensic Index)

현장증거물 색인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로부터 분석된 DNA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장증거물 색인에 있는 자료와의 동일성 검색은 범죄현장들을 상호 연관시킬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특히 연쇄 범죄인(Serial Offenders)에 의한 동일 범죄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

2) CODIS 검색을 통해 DNA가 일치함을 찾아내어('Hit' 라고 부름) 수사에 도움을 준 경우를 말한다.

2. 범죄자 색인(The Offender Index)

범죄자 색인은 성범죄(Sex Offenses)를 비롯한 기타 폭력적 범죄(Violent Crimes)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대상자의 범위는 각 주마다 다르다. 현재 상당수의 주에서는 그 대상을 다른 중범죄인에게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범죄자 색인에서 검색된 DNA의 동일성은 범인의 신원을 1차적으로 즉시 알 수 있게 해준다.

이후에는 연구소의 전문 DNA 분석가들이 동일성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 접촉하게 되며, 확정 후에는 지목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수사가 진행된다.

V. CODIS의 통계 현황

현재 미국의 50개 주, 워싱턴 D.C., FBI 연구소, 미육군(U.S. Army)이 NDIS에 참여하고 있다. NDIS에는 2004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장증거물 색인에 93,712개, 범죄자 색인에 1,885,776개의 프로파일(Profile)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총 자료 수는 1,979,488개이다. CODIS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인 수사 이용 건수(Investigations Aided)²⁾는 총 20,350건이다. 그 각각의 세부적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NDIS에 관한 세부 통계(2004년 9월 기준)

주	현장증거물 프로파일의 수	범죄자 프로파일의 수	CODIS 연구소의 수	NDIS 참여 연구소의 수	수사 이용 건수
알라바마	241	20,294	4	4	434
알래스카	212	3,190	1	1	61
아리조나	2,605	23,097	7	7	363
아칸사스	551	16,270	1	1	55
캘리포니아	6,496	209,358	17	17	785
콜로라도	900	31,811	4	4	83
코네티컷	715	6,044	1	1	95
델라웨어	85	1,620	1	1	1
플로리다	6,932	191,294	10	10	2,840
조지아	3,422	83,808	2	2	472
하와이	18	1,802	1	1	1
아이다호	79	2,563	1	1	4
일리노이	8,003	52,228	9	9	1,551
인디애나	1,053	32,532	3	3	382
아이오와	838	3,705	1	1	39
캔자스	933	8,842	5	5	62
켄터키	1,090	3,771	1	1	83
루이지애나	1,560	20,947	5	5	325
메인	700	3,404	1	1	51
메릴랜드	1,690	19,484	6	6	200
매사추세츠	1,136	0	2	2	361
미시건	3,272	116,183	4	4	707
미네소타	1,994	20,075	2	2	187
미시시피	0	1,473	1	1	2
미주리	3,009	26,735	4	4	430
몬타나	50	2,278	1	1	9
네브라스카	236	2,204	1	1	9
네바다	890	7,903	2	2	146
뉴햄프셔	84	41	1	1	6
뉴저지	1,668	11,554	1	1	114
뉴멕시코	722	23,186	3	3	363
뉴욕	12,158	128,513	9	9	4,267
노스캐롤라이나	1,476	35,964	2	2	186
노스다코타	9	992	1	1	2
오하이오	5,120	46,491	10	10	945
오클라호마	407	28,526	3	3	53
오레곤	2,244	50,780	1	1	474
펜실베이니아	2,542	40,943	4	4	406
로드아일랜드	26	328	1	1	0
사우스캐롤라이나	984	26,771	1	1	114
사우스다코타	53	1,771	1	1	0
테네시	1,199	52,768	3	3	69
텍사스	6,576	175,493	16	16	616
유타	257	5,735	1	1	22
버몬트	20	829	1	1	0
버지니아	3,788	195,444	4	4	2,233
워싱턴	793	61,404	4	4	198
웨스트버지니아	64	3,395	1	1	2
위스콘신	2,130	79,315	2	2	460
와이오밍	4	821	1	1	5
워싱턴D.C./FBI연구소	1,756	311	3	3	57
미육군	922	1,486	1	1	20
계	93,712	1,885	173	173	20,350

VI. CODIS의 성공적 활용 사례 및 관련 기사

1. CODIS의 성공적 활용 사례

가. 플로리다(Florida) & 아이오와(Iowa); 2000년 2월

1995년, 신원미상인 여인의 변사체가 아이오와주 디모인(Des Moines)의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시체가 놓여있던 위치를 단서로 트럭 운전사들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아이오와공안국(The Iowa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은 현장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증거들에 대한 DNA 감식을 FBI 연구소에 의뢰하였고, FBI 연구소는 그것을 분석하여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정보를 알아냈다.

2000년 2월, 해당 자료는 CODIS에 업로드(Upload) 되었고 NDIS의 범 죄자 색인에서 동일한 DNA를 가진 플로리다의 한 범 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때 그는 1999년에 또다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플로리다의 한 감옥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트럭 수송 영업 면허를 갖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나. 미주리(Missouri); 2000년 1월

1997년 12월,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경찰국(The St. Louis Police Dept.)은 RFLP 기법³⁾을 사용하여 분석된 현장증거물의 DNA 정보를 CODIS의 현장증거물 색인에서 검색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1996년에 버스 정류장에서 유괴된 후 성폭행 당한 두 소녀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즉, 당시 소녀들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 현장증거물 색인에서 검색된 것이다. 당시 그 사건들은 도시의 정반대편에서 각각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 데 실패하였었다.

1999년, 세인트루이스경찰국은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1996년에 발생한 사건들 중 한 사건의 DNA 시료를 STR 기법⁴⁾을 사용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 재분석된 DNA 정보가 1999년에 발생했던 한

3) 인간 DNA의 염기서열은 약 31억개나 되므로 31억개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여 대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DNA의 특이 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 RFLP(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성) 기법이다. 이것은 DNA 염기서열 특정 부위의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를 제한효소로 절단했을 때 생기는 절편의 길이가 모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DNA를 분석·대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법이다.

4) 유전자의 본체인 DNA(Deoxyribo Nucleic Acid, 디옥시리보핵산)는 핵산의 일종이다. 핵산은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라고 하는 단위물질이 많이 연결된 고분자 유기물이며, 뉴클레오티드는 염기·디옥시리보스(Deoxyribose)·인산이 각각 한 분자씩 연결되어 구성된다. 염기에는 아데닌(Adenine: A), 구아닌(Guanine: G), 시토신(Cytosine: C), 티민(Thymine: T)의 네 가지가 있다. 따라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는 A를 가진 것, G를 가진 것, C를 가진 것, 그리고 T를 가진 것의 4종류가 있게 된다. 이 4종의 뉴클레오티드가 무수히 많이(약 31억개) 연결된 것이 바로 DNA이며 그것의 배열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DNA가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 CODIS에서 검색되었다. 그 결과 체포된 용의자 무어(Moore, D.)는 1999년에 또다른 성범죄를 두 건 더 저질렀음도 자백하였다.

다. 버지니아(Virginia); 1999년 3월

1987년 10월, 버지니아주의 프린스조지 카운티경찰국(The Prince George County Police Department)은 강간을 당한 후 칼에 찔렸다는 한 여인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즉시 그 여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몸에는 많은 자상(刺傷)이 나 있었다. 리치몬드(Richmond)에 있는 버지니아지역과학수사연구소(The Virginia Division of Forensic Science)는 현장에 남겨져 있던 증거들로부터 DNA 정보를 분석하였다.

12년 후(1999년 3월), CODIS에서 당시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 정보와 일치하는 전과자를 찾을 수 있었다. 범인은 강간죄로 1989년 이후로 버지니아의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였다.

라. 네바다(Nevada); 2000년 5월

2000년 5월 31일, 네바다주의 레노경찰국(The Reno Police Department)은 6세 여아를 유괴·살해한 혐의로 23세의 한 남자를 체포하였다. 이것은 네바다주 DNA 데이터베이스(The Nevada State DNA Database)의 정보를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내 체포한 첫 번째 사례였다.

1977년 9월 3일, 당시 6세였던 리사 마리 본햄(Lisa Marie Bonham)은 가족과 함께 레노에 있는 아이들와일드 공원(Idlewild Park)에 놀러 왔다가 실종되었다.

다음 날 아이의 옷이 레노에서 몇 마일 떨어진 네바다주 베르디(Verdi)의 쓰레기통 안에서 갈색 종이 가방에 담겨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 옷은 정밀 검사를 위해 FBI 연구소로 보내졌는데, 옷의 일부에서 혈액형이 A형인 남자의 정액 얼룩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1977년 11월 13일, 희생자의 유골 중 일부가 네바다주 경계선에서 3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시에라카운티(Sierra County)의 토이야브 국립림(Toiyabe National Forest)에서 발견되었다.

만들어진다. 그 배열순서에는 무한히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 만들어지는 DNA의 종류도 무한히 많아지게 되는데, 생물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DNA의 염기서열(a, g, c, t의 4가지 염기코드가 무수히 반복됨)은 일정한 반복배열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예: ...aatg...aatg...aatg...aatg...). 이렇게 염기가 짧게 연쇄 반복되는 부분을 STR(Short Tandem Repeats)이라고 부르는데, STR의 구조(4 내지 5 염기)와 출현 횟수(5 내지 20회)는 개인별로 각각 다르다. 즉, STR 기법은 이러한 STR의 구조와 횟수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해 DNA를 분석·대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 DNA의 약 31억개 염기 중 어느 부위에 이러한 반복이 있는지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그러한 특정 부위만을 비교하여 STR을 찾아낸 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법 - DNA를 특수 마생물을 사용해 무한히 복제·증폭하는 기술로서 DNA 한 가닥을 수십억 개의 가닥으로까지 쉽게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체에서 추출되는 DNA의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분석에 필요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의 멀리스(Mullis, K. B.)에 의해 개발된 이 기술은 20세기 유전공학 발전에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였다 - 으로 증폭시켜 DNA형을 분석·대조한다. 현재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법이 되었다.

2000년 5월 25일, 워슈카운티보안관 범죄연구소(The Washoe County Sheriff's Crime Laboratory)는 COD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네바다주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희생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 정보와 일치하는 DNA형을 가진 스티븐 로버트 스미스(Stephen Robert Smith)라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2. CODIS 관련 기사

가. DNA 증거가 강간에 대한 유죄선고를 이끌어내다⁵⁾

로드니 크룩스(Rodney Crooks)는 1994년에 저지른 강도죄로 오하이오(Ohio)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였다. 그러나 석방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그는 다시 1993년에 저지른 강간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지난 달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DNA 증거 덕분이었다. 해밀턴 카운티(Hamilton County)의 검사인 마이크 알렌(Mike Allen)은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오하이오의 모든 중범죄자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해놓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해밀턴 카운티 법원(Hamilton County Common Pleas Court)의 판사인 로버트 루엘만(Robert Ruhlman)은 크룩스가 저지른 강간, 강도, 주거침입, 폭행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단기 15년-장기 75년형을 선고

하였다. 35세인 크룩스는 판사의 선고에 대하여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판사 루엘만은 “어서 여기서 나가시오. 당신이 한 것이 맞소. 당신은 거짓말쟁이며 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요. 나는 당신이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크룩스는 수형 성적 증명서를 제시하며 자기가 오하이오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 동안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형을 감형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판사는 이 역시 무시하였다. “내가 바라는 증명서는 당신이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사망 증명서일 뿐이요. 당신은 다시 사회에 나올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판사는 말했다.

1993년에 강간당한 여인의 몸 속에서 검출되어 저장된 DNA가 후에 CODIS 검색을 통해 크룩스의 DNA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방어라고는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주장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크룩스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신을 강간했으며 합의한 적이 결코 없다고 증언하였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서로 합의하여 일어난 정사일 뿐이라는 우스꽝스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신은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그녀를 깨우고 목에 칼을 들이댄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회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일 뿐이요.” 라고 판사는 말했다.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수형자의 유형을 더욱 늘리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검사 알렌은 이 판결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면봉으로 구강내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을 통해 더욱 많은 유형 - 6개 내지 12개 이상 - 의 수형자로부터 의무적 DNA 테스트(The Mandatory DNA Testing)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다른 주들은 모든 중범죄자에 대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오하이오주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알렌은 말한다.

모든 개인을 독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적 표지인 DNA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DNA와 비교하기 위해 수형자들로부터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주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31,000명 이상의 수형자의 DNA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나. FBI의 법과학기술을 들여다본다⁶⁾

다음은 FBI의 CODIS 책임자(Unit Chief of the FBI's CODIS Program)인 존 베크(John Behun)과의 인터뷰 내용이다(질문은 Q, 답변은 A로 표시함).

Q) DNA 분석에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년 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증거로부터도 DNA를 분석할 수 있는지.....

A) 시간적 제약은 없습니다. DNA가 증거로부터 추출되고 증폭될 수만 있다면 DNA 프로파일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FBI 연구소와 다른 주 연구소는 21년, 22년, 26년 된 증거로부터 분석된 DNA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Q) DNA 데이터베이스가 범죄를 범했던 사람(전과자 등)을 체포하는 데에는 유용한 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는지.....

A) 국가적인 범위에서 CODIS는 범죄 현장의 증거로부터 나온 DNA 프로파일,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들의 DNA 프로파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골의 DNA 프로파일, DNA 채취에 동의한 실종자 친족의 DNA 프로파일을 보유하는 것만을 법률에 의해 허가 받았습니다.⁷⁾ 주 범위에서 각 주들은 각자의 법률에 의해 일정한 유형의 DNA 프로파일을 주 CODIS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몇몇 주들은 체포 단계에서부터 DNA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이든 주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6) 워싱턴포스트 2003년 5월 6일자(The Washington Post, 2003)

7) DNA감식법 Section 14132(법집행기관 DNA 감식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색인) (a)는 'FBI의 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DNA 감식 기록에 대한 색인, 범죄 현장으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 분석에 대한 색인, 신원불상자의 유골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 분석에 대한 색인, 실종자의 친족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DNA 샘플 분석에 대한 색인을 설치할 수 있다(The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y establish an index of DNA identification records of persons convicted of crimes; analyses of DNA samples recovered from crime scenes; analyses of DNA samples recovered from unidentified human remains; and analyses of DNA samples voluntarily contributed from relatives of missing persons)'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신시내티포스트 2002년 6월 8일자(Perry, 2002).

DNA 프로필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벌칙 규정⁸⁾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FBI 품질 보증 기준(FBI Quality Assurance Standards)⁹⁾에 의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미국 전역에 걸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국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폴(Interpol)이나 다른 나라의 법집행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A) 현재 20개 국가가 그들의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기 위해 COD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국가와 국제 기구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FBI는 이미 범죄 수사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CODIS는 그러한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나감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CODIS는 1990년에 최초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1990년 이전에는 범죄 수사에서 DNA 검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A) DNA 검사는 CODIS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CODIS는 사건 사례에서 수집된 DNA 프로필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발전된 수단입니다.

Q) CODIS 프로그램은 지방 경찰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CODIS 직원들이 지방 경찰국에 와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A) CODIS에 참여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에 DNA 프로필을 올리는 것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CODIS 팀이 지방 경찰국을 방문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Q) FBI에서는 연방 차원의 사건들만 다룹니까? 주 차원의 사건들도 다루는지.....

A) FBI 연구소는 연방 차원의 사건과 선택된 주·지방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요구하는 연구소나 기관의 능력, 잔무(殘務), 우선 순위, 기타 요소들이 사건의 선택시에 고려됩니다.

Q) CODIS에서 DNA가 일치하는 자를 찾아낸 경우에 FBI는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상호 접촉하게 됩니까?

A) CODIS에서 DNA 일치자를 찾아내게 되면 FBI는 관련되는 두 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8) DNA감식법 Section 14135e(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c) 벌칙(Criminal Penalty)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이 법에 의해 규정된 샘플이나 결과를 유출시키거나 허가 없이 고의로 이 법에 규정된 샘플이나 결과를 취득하는 자는 10만 달러(한화 1억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 person who knowingly discloses a sample or result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in any manner to any person not authorized to receive it; or obtains, without authorization, a sample or result describ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100,000)'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FBI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결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현장증거물 DNA 검사 연구소를 위한 기준(The Standards for Forensic DNA Testing Labs)' 과 '범죄자 연구소를 위한 기준(The Standards for Convicted Offender Labs)' 의 두 가지 품질 보증 기준을 연구소에 추천하고 있다. DNA감식법 Section 14131(품질 보증과 능력 테스트 기준) (a) (1) (A)에 의해 설립된 DNA자문위원회(DAB, DNA Advisory Board)는 이러한 품질 보증 기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DAB는 내셔널아카데미오브사이언스(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장과 전문 범죄 연구 단체들에 의해 추천된 주·지방·사립 법의학 연구소 과학자, 유전학자, 미국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통지해주고 해당 사건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교환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말해줍니다. 통지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 현재 주와 지방의 경찰국은 비용 문제로 인하여 DNA 증거에 대한 검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DNA 증거들이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선반에 그대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DNA 검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A) 연방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DNA 검사를 수행하는 주와 지방의 기관들에 1천만 달러(한화 120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DNA 검사에는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은 기관 내에서 수행되느냐 혹은 계약에 의해 다른 곳에서 수행되느냐, 즉 분석이 어디에서 수행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DNA 증거가 더 이상 개인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질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석이 가능한 DNA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

A) 햇빛, 습기, 물, 강한 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DNA 증거는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에 1년 이상 노출된 옷에서도 충분한 양의 DNA를 채취하기도 하였습니다.

Q) CODIS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CODIS에는 매일 4만5천 내지 5만개의

새로운 DNA 프로필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DNA 증거 발견에서부터 DNA 분석 결과를 CODIS 정보와 비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A) 최초의 단계는 증거에 남아 있는 DNA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DNA를 추출·정제·증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DNA를 분석한 후 프로필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DNA 프로필이 CODIS에 업로드되고 검색이 실행됩니다. 그 후 DNA 프로필 일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Q)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우리는 Hit의 수, CODIS에 올라 있는 프로필의 수, 수사 이용 건수 등과 같은 실행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시스템의 실행 추적 틀에 기록되기에 앞서서 모든 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은 품질 보증 기준과 능력 테스트 기준(Proficiency Testing Standards)¹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FBI 웹사이트(www.fbi.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 FBI는 DNA 분석을 수행하는 법의학 연구소와 법의학 분석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능력 테스트 기준을 연구소에 추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기적인 개정 역시 DAB에서 수행한다.

VII. CODIS의 미래

두 가지 요인 - ① 인간 게놈(Genome)¹¹⁾ 연구 기술의 발달 ② 잠재적 범죄자들의 DNA 정보 수집을 통한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인식 - 으로 인해 미국에서 CODIS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실제로 많은 법집행기관들이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수사시 지문 이외에 DNA 분석을 거의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많은 주들이 CODIS DB의 영역과 범위를 신속히 확장시키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어떤 주는 DNA 정보의 수집 대상을 중범죄인 뿐만 아니라 체포된 모든 사람들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DNA 분석 작업 속도가 샘플 수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50만명 이상이나 되는 유죄 입증 범죄자들의 샘플이 DNA 분석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이다. 게다가 많은 연구소들이 기존의 샘플들을 새로운 기술인 STR 기법을 사용하여 재분석 중이다.

또한 FBI는 CODIS 색인에 신원불상자 색인(The Unidentified Person Index)과 실종자 색인(The Missing Person Index)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원불상자 색인은 변사체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의 DNA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실종자 색인은 DNA 채취에 동의한 실종자의 친족의 DNA 정보-특히 모계 친족(어머니, 형제·자매 등)의 미토콘드리아 DNA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보충] 참조.

FBI 연구소는 CODI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 기법의 완전한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주·지방의 연구소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보충>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

사람의 세포에는 두 가지 종류의 DNA가 존재한다. 즉 세포핵¹²⁾에 존재하는 핵 DNA(Nuclear DNA)와 세포질¹³⁾ 속의 미토콘드리아¹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Mitochondrial DNA)가 그것이다. 핵 DNA는 염색체 속에 존재하며 모두 약 31억개

11) 게놈(Genome)이란 한 개체가 지닌 유전자 세트를 말하며, 이는 생명 현상의 유지 및 모든 형질의 발현에 필요한 하나의 단위이다. DNA는 염색체 속에 존재하므로 인간의 게놈은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 즉 23쌍의 서로 다른 염색체로 이루어진다. 현재 인간이 가진 모든 유전자의 위치와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한 연구 계획인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5개국에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어떤 염기서열에 어떤 유전정보를 가진 염기서열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내 일종의 유전자지도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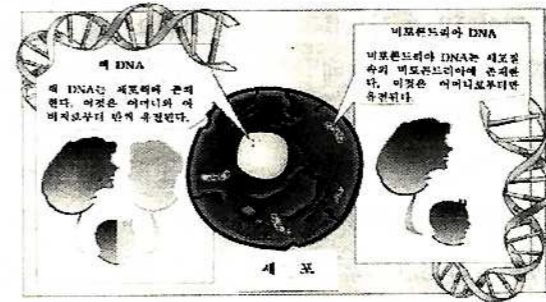
12) 12) 세포의 원형질 속에 있는 구형의 소체이다.

13) 세포의 원형질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 색소체, 골지체, 마이크로솜 등이 함유되어 있다.

14) 과립상(顆粒狀) 또는 실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서, 크기는 0.2-0.3nm로 주로 세포호흡에 관여한다.

염기로 이루어진 커다란 DNA인데,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확히 반씩 유전된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DNA는 1만6천여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작은 DNA이며, 이것은 어머니로부터만 유전(모계 유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⁵⁾

[<그림 2> 참조]. 그러므로 어머니, 형제, 자매, 어머니와 관계되는 모든 친족은 미토콘드리아 DNA형이 모두 같게 된다(이근영, 2002; 한면수, 2002, p. 196).



<그림 2>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

DNA 감식은 보통 핵 DNA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부패, 훼손 등으로 인하여 세포핵이 파괴된 경우가 많아 핵 DNA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를 분석한다. 세포핵은 1개의 세포 속에 단 1개만 존재하나 미토콘드리아는 수백에서 수천개까지 존재하므로 양적으로 풍부하여 부패, 훼손 등의 가혹한 주위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근이 없는 모발, 손톱 등과 같이 핵 DNA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증거물에 대해서도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석은 가능하다(박기원, 2002, pp. 18-20). DNA의 대조에 있어 핵 DNA는 그 길이가 너무 길어 STR의 구조와 횡수 차이를 상호 대조하는 방법을 쓰는데 반해,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 길이가 비교적 짧으므로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여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변사체 등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문을 대조한다. 그러나 지문을 이용한 방법은 지문자료가 없는 자의 사체이거나 부패와 훼손이 심하여 손가락 지문이 남아 있지 않는 사체인 경우에는 신원확인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때에는 DNA의 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유골인 경우에는 핵 DNA의 분석 역시 곤란하게 되므로 결국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15) 이것은 수정시 세포질이 난자로부터만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종자나 실종자의 모계 친족의 그것과 대조하게 된다.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의 DNA를 알 수 있는 대조감정물(실종자가 사용하던 빗이나 칫솔¹⁶⁾, 의학적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제공되었던 실종자의 유전적 물질 등)이나 그 모계 친족의 DNA 시료(혈액, 구강내 세포 등)를 미리 확보하여 그것의 미토콘드리아 DNA 정보를 분석·저장해놓는다면, 후에 실종자가 크게 부패되거나 훼손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도 그 유골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 정보를 그것과 대조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체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체로부터 핵 DNA 추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핵 DNA를 상호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미국 FBI가 CODIS에 실종자 색인을 추가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이는 신원불상자의 DNA 정보와의 상호 유기적인 대조를 통하여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이외의 대조를 통해 실종자가 변사체 등의 유골로 발견되지 않았는지 등을 신속히 검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원불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종자 색인과의 대조를 통해 현재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FBI가 신원불상자 색인을 추가하려는 이유 역시 이런 데에 있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DNA 감식을 통한 유골 신원

확인의 대표적 사례로는 러시아 로마노프(Romanov) 왕가의 유골 발굴을 들 수 있다. 1918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 살해당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9구가 1991년에 발굴되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의 분석을 통하여 그 중 5구가 동일한 DNA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이들이 가족간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한면수, 2002, p. 196).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개구리소년 유골 발굴을 들 수 있다. 1991년에 실종된 초등학생 소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5구가 2002년에 실종 지점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것이다. 5구의 유골들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관계로 부패와 훼손 상태가 심하여 핵 DNA 분석이 불가능해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유골로부터 대퇴골 일부를 채취하고 실종된 아이들의 어머니로부터 각각 혈액을 채취하여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을 상호 대조한 끝에 5구의 신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박기원, 2003, pp. 30-33).

16) 빗에는 모발이나 두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있고 칫솔에는 치모가 박혀있는 부분에 양치질시 묻은 혈액이나 잇몸 세포가 있어 DNA의 추출이 가능하다(한면수, 2002, pp. 180-181).

VIII. 맺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경부터 유전자 자료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기관들의 이해 관계로 인한 합의 실패와 인권 침해·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아직까지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강력범(살인, 강간 등) 검거와 예방, 실종자(미아, 가출인)와 변사자 등의 신원 확인, 수사 인력과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해놓고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아찾기의 경우에는 이미 경찰청이 2004년 4월부터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연고 아동과 장기 미아의 부모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원 불상 변사체에 대해서도 DNA 대조를 통하여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CODIS와 같은 유전자 자료은행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첫째, 법적 근거의 문제이다. DNA 시료의 채취와 분석에 관하여 현행법상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전자자료은행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DNA 감식 결과의 형사소송절차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둬야 좋을 것이다.

둘째, 그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관련 기관간의 충분한 합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장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CODIS에서 저장하고 있는 DNA 프로파일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① 범죄 현장의 증거로부터 나온 DNA 프로파일 ②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들의 DNA 프로파일 ③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골의 DNA 프로파일 ④ DNA 채취에 동의한 실종자 친족의 DNA 프로파일의 4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전 국민의 DNA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전 국민의 십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시 채취하고 있는 것처럼 전 국민의 DNA 시료를 채취하여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 국민DNA 등록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병상, 2003).

넷째, 유죄 입증 범죄자들의 DNA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DNA 감식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상해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가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DNA 감식 대상이 되는 생물학적 증거가 범죄 현장에 유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조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조군의 존재는 당해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유영찬, 장영민, 1998, p. 511).

다섯째, 검색의 목적을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유전자자료은행의 검색은 실종자나 변사자의 신원 확인,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색을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는 사용 행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DNA 프로필을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벌칙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사와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자료은행의 설치에 인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건(포천 보험설계사 피살 사건, 부천 초등생 피살 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 등)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의 강력 사건, 팜 KAL기 추락 사건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등의 대형 참사 등을 생각해보면 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기원. (2002). 유전자 분석에 의한 신원확인. 수사연구, 20(8), 18-21.
- 박기원. (2003). 실종자 개인식별 시스템. 수사연구, 21(7), 29-33.
- 오병상. (2003). 영국경찰 전국민 DNA 등록 추진(중앙일보 2003년 9월 8일자). 2004. 11. 23.
인용: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476088§ion_id=104&menu_id=104
- 유신모. (2004). 미국 최악 48건 연쇄살인범 법정 자백(경향신문 2003년 11월 6일자). 2004. 11. 22.
인용: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039509§ion_id=104&menu_id=104
- 유영찬, 장영민. (1998).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논총(치안연구소), 14(12), 447-541.
- 이근영. (2002). 성서 초등생 유골 유전자 감식 어떻게 하나(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1일자). 2004. 11. 20. 인용: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01623§ion_id=102&menu_id=102
- 한면수. (2002). 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DNA 프로필의 역할. 경찰학연구(경찰대학), 3(10), 171-286.
- 한면수. (2003). 유전자자료은행의 필요성 및 세계 각국의 현황. 경찰학연구(경찰대학), 5(10), 199-236.
- FBI. (2000a). The FBI's combined DNA index system program. Retrieved November 22, 2004, from <http://www.fbi.gov/hq/lab/codis/brochures.htm>
- FBI. (2000b). The FBI's DNA & databasing initiatives: nuclear DNA analysis, mitochondrial DNA analysis, CODIS. Retrieved November 22, 2004, from

<http://www.fbi.gov/hq/lab/codis/brochures.htm>
 FBI. (2004).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Retrieved November 22, 2004, from
<http://www.fbi.gov/hq/lab/codis/index1.htm>
 FSS. (2004). The National DNA Database: annual report 2003-2004. Retrieved November 23, 2004, from
http://www.forensic.gov.uk/forensic_t/inside/about/annual.htm
 Perry, K. (2002, June 8). DNA evidence leads to sentence in rape. The Cincinnati Post. Retrieved November 22, 2004, from <http://www.cincypost.com/2002/jun/08/rape060802.html>
 The Washington Post, (2003, May 6). Inside the FBI: forensic science technology. The Washingtonpost. Retrieved November 22, 2004, from
http://discuss.washingtonpost.com/wp-srv/zforum/03/r_nation_fbi050603.htm

策

경찰체포·호신술의 새로운 방안 모색

■ 김학원·강국선*

I. 서론

1. 경찰의 의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찰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경호요인 및 대간첩 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체포·호신술의 의의 및 목적

경찰체포술은 체포 대상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행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술 또는 경찰장구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형의 수단 방법으로 인체의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리적 기술이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경찰무도뿐만이 아닌 레슬링, 씨름, 권투 등에서 체포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하고, 무형의 수단방법이란 기세, 언어 등을 말한다.

경찰호신술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손, 발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 도구 등을 인체 역학적인 원리에 의하여 사용, 기세, 언어 등을 이용한 무형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경찰대학 상무학과 교수요원

말한다. 즉 경찰체포·호신술은 자기의 몸과 타인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경찰목적의 최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체포술과 경찰호신술은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보완적이다.

경찰체포·호신술의 수련목적은 공격과 방어의 반복 훈련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함과 동시에 기술을 향상함으로써 범법자를 체포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인들의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범법자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당할 경우 신속하게 제압하고 완벽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임무 수행시 실력 행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범인을 체포할 때 공격 또는 저항을 받는 다든가 또는 범인이 도주할 경우 체포능력이 결여되면 범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고 검거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범인을 체포하였다 할지라도 체포방법이 미숙하여 범인에게 필요이상의 실력행사를 행사하였다면 인권침해 등의 비난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인으로부터 공격 또는 저항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제압·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범위

경찰정예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기관인 경찰대학생과 신입순경과정 및 전의경 과정의 중앙경찰학교, 직무보수교육과정인 경찰종합학교와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무도교육을 기술하되 체포·호신술의 기술분석과 수련형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4. 연구의 방법

문헌조사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 필요한 국내서적, 국내의 논문, 외국경찰체포·호신술의 기술분석과 경찰청의 교육훈련계획 등 자료와 현직 경찰대학의 태권도와 체포·호신술의 교수요원으로 경험에서 얻은 요소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II. 경찰체포·호신술의 이론적 배경

1. 경찰체포·호신술을 이루는 무도의 개념

무도에 대한 한자적 의미는 무(武)는 창(戈)字와 그칠 지(止)字가 합해져 있어 들어오는 창(槍)을 막아 그 찌르는 행위를 정지시켜 (止), 살생 아닌 방어로 평화를

유지함에 목적을 둔 기능을 의미하는 “武”字와 여기에 원래 인간이 가는 길, 즉 형이상학적 의미의 참된 인간을 의미하는 “道”字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다.

무도의 용어는 동양권의 경우 그 명칭이 다양한데 기술을 중시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무술(武術), 정신을 중시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무도(武道),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예(武藝)로 통칭되어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체육학계 및 일선에서는 무도(武道)로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공용어로서는 martial art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나영일은 개념구분을 발전논리 즉 무술, 무도, 무예라는 논리를 전개시켰고 무술과 무예를 이분법적인 논리를 전개하여 무술은 단순한 기능이나 재주인 반면에 무예는 기능 습득된 재주에 대한 가치부여로 보고있으며 무도란 무술을 통한 철학적 정신추구와 교육적 차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무술, 무도, 무예는 궁극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호신과 공격적 성격인 제압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련과정에서 인격완성 등의 정신수련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

2. 경찰체포·호신술의 특성

경찰관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호신능력 및 운동지각에 대한 흥미가 동기 유발되어 경찰교육목표를 실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관 본인의 호신과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압을

이루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찰체포·호신술은 강인한 체력과 기술을 습득하여 우발상황 발생과 범인 검거시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수련방향은 종합적인 권법과 유술, 그리고 무기술과 세부적으로는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 등 모든 기술의 체득은 물론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의 복합적인 체력단련과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각 무도가 갖는 기술의 원리와 특성 및 동작의 역학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체득하고 범죄상황별 및 범인 대응시 적용 가능한 수련이 되어야 한다.

3. 경찰체포·호신술의 선행연구

경찰무도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상민(1998)은 “경찰관 무도수련이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경찰무도수련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정이 높고 체력이 증진되어 체포·호신능력이 향상되며 동료간의 신의와 친목이 돈독해지며 서로 강한 연대감을 느낀다고 보고 있으며 오정주(1999)는 “警察武道の 歴史的 考察”에서 경찰과 무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경찰의 개념과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등으로 경찰관이라는 직업자체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김의환(2001)은 “전국대학교 경찰관련학과 무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서

경찰은 정신적 준비와 신체적·안전능력의 준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체포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체포술은 시간·공간을 초월해서 발휘되어야 함으로 지속적인 반복 연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2002)은 “경찰무도교육시스템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무도교육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도교수요원의 자질향상, 시설의 개선, 신임경찰관 채용시 체격 및 체력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김성길(2002)은 “경찰무도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에서 기존의 무도훈련방식을 탈피한 무도사례연구, 집단토의, 참여식 훈련 방법 등으로 침체된 무도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경찰체포·호신술에 대한 순수한 선행 연구는 중앙경찰학교 오정주(1999)의 “경찰체포호신술 교본”에서 발전적인 이론적 체계와 기술적 토대를 이루었으며 경찰청(2004)에서 그간의 체포술 동작을 완결한 수정본인 경찰체포술 교재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Ⅲ. 경찰체포·호신술의 실태 및 문제점

1. 경찰체포술 훈련현황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만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바,

특히 세계화, 지방분권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경찰교육훈련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권력 경시풍조 만연에 따른 공무집행 사범의 증가현상에 대하여 종래의 안이하고 소극적이 대처방식을 지양,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압하고 검거한 공무집행 사범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기사용 및 체포 연행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신임경찰관은 물론 그 밖의 파출소 근무중인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장상황별 구체적 행동지침을 수립, 실효성 높은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교육생 및 일선기관의 경찰관 대상 2004년 기준 경찰교육훈련 계획중 체포술 훈련 현황을 살펴본다.

1) 교육기관 훈련현황

(1) 경찰대학 무도 및 체포술 교육현황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는 학장지정과목으로 전학년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일반학기 중 1학년 때 한 종목을 선택하여 4학년 졸업시 까지 초단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무도는 1학점으로 교육시간은 1학년과 2학년은 학기당 64시간, 3학년과 4학년은 32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진다. 경찰체포호신술은 4학년 2학기(32시간)에 한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2002년부터 제1회로 경찰체포술 경연 대회가 매년 10월에 개최되면서 2개월전에 선수단을 선발, 수련하고 있다. 선발인원은 전체직원 대비 20% 내외이고 대학생은 전체학생대비 0.5%로 체포술을 일반직원들은 20%만 수련하고 대학생은 4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 0.5%만 수련한다.

(2) 경찰종합학교

경찰관의 직무과정과 간부후보생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직무과정 즉 경위기본과정, 경사기본과정, 교통실무, 형사, 정보 등 각 과정이 2주간의 일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체육활동은 평균 7시간이지만 무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직무과정 중 무도사범과정 1주는 38시간이 체포술 교육시간이다. 경찰간부 후보생 과정은 1년으로 무도교육이 150시간이고 경찰체포술 교육은 20시간이다. 일반 경찰관(직원)의 경우 월 2회 4시간의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 중앙경찰학교

신입순경 과정에서 일반순경은 6개월 교육 중 무도교육이 50시간, 체포술 교육이 50시간이며 101단 과정은 5개월 교육 중 무도교육이 41시간 체포술 교육이 41시간이다. 의무경찰과정은 3주 교육 중 체포술 교육이 16주, 전경은 2주 교육 중 체포술 교육이 4주이다.

경찰관(직원)의 경우 월 2회 4시간의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2)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체포술 교육현황

경찰청 교육계획훈련의 근거로 경정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2회 4시간씩 체포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열리는 경찰체포술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5월경에 경찰서 단위의 선수선발을 실시하는 체포술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서 대표가 지방경찰청 대표로 정해지면 강도 높은 체포술 훈련이 10월 경연대회까지 수련하게 된다.

2. 경찰체포·호신술의 문제점

경찰체포·호신술의 문제는 교육시간, 교육시설, 지도자, 내실 있는 기술 프로그램, 관심도 등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각 부분별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교육시간

경찰대학의 경우 대학생은 8학기동안 마지막 한학기(32시간)동안 체포술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경찰관(직원)은 20%정도만 체포술 교육을 받고 월2회 4시간씩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80% 이상이 체포술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체포술 교육시간은 다른 동아리 활동으로 대체되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종합학교의 경우 간부후보생 과정은 양호하지만 경찰관(직원)은 월 2회 4시간의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역시 형식에 불과하여 체포술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직무과정의 경우에는 무도사범과정을 제외하여 타 과정에서는 체포술 시간조차 없는 현실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입순경과정(일반순경, 101단)과 전·의경과정은 문제가 없으나 경찰관(직원)의 경우에 월 2회 4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역시 다른 동아리 활동 등으로 대체되어 체포술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 및 지방청의 경우에도 월 2회 4시간의 체포술 교육시간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경찰업무 특성상 외근 활동 등으로 인한 소집이 불가능하여 체포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교육시설

체포술 교육은 실무과목으로서 지도자의 이론적 설명과 기술시범, 반복 훈련을 통한 술기 능력배양과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시설이 양호하나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의 수련시설은 열악하다.

특히 지구대 단위와 치안센터 단위의 수련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의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233개 경찰서

중 전용 수련장 확보가 된 경찰서는 136개로 전체 경찰서 중 절반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지도자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 향상이 기대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각 경찰교육기관 무도교수요원과 각 지방청 무도사범을 제외하고는 일선경찰서 단위의 사범은 다른 업무의 병행 등으로 무도교육적 철학이 부족하다.

지도자는 관련업무에 이론적으로나 실기적으로 정통하고 창의적이며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의 경우 체포술 지도사범은 경찰무도와 체포술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경찰업무를 병행하다보면 그 전문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범에 대한 지위가 상승되어야 하고, 지도자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도사범은 지위면에서도 관심 밖이다.

지도자의 자질은 교육적 철학, 이론과 실기에 정통, 인품,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하나 대체적으로 경찰무도사범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무도사범 스스로 체포술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명감도 부족한 실정이다.

4) 프로그램

경찰청에서 2002년에 자체 개발한 15개 동작의 맨손 공격시 6개 동작, 흉기대항이 6개 동작, 권총 피탈 방지가 2개 동작, 앉은 자세가 1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 맨손공격은 주먹으로 공격하는 범인의 제압은 주먹 쳐내며 목조르기, 막아잡으며 밧다리 걸기가 있으며 발로 공격하는 범인제압에서는 아래 막고 어깨 꺾기, 안다리걸어 넘기기가 있다.

그리고 먹살잡고 대항하는 범인 제압에는 팔꿈치 꺾기, 한손 비틀어 밧다리 걸기가 있다. 흉기로 대항하는 범인제압의 6개 동작에서 칼로 공격하는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방법은 쳐내며 오금 누르기, 올려 차고 명치차기, 흉기로 공격하는 범인을 경찰봉으로 제압하는 술기는 손목 치고 무릎 치기, 각목으로 내려칠 때 제압은 손목 잡아 팔꿈치 꺾기, 피하며 밧차기가 있다. 권총 공격시는 왼손 쳐내며 밧다리 걸기, 목 찌며 팔꿈치 꺾기, 앉은 자세는 팔꿈치 비틀어 꺾기가 있다. 현재 위와 같이 15개 동작을 개발하여 체포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동작의 상황 설정은 현장적응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기본 동작은 수많은 상황에서 대응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응용성이 가미되어야 함에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구체적 사항으로 15개 동작은 상대가 공격해올 때 방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범인과 대처할 때 상대를 먼저 공격하여 제압·체포하는 경우도 필요한데 기존의 체포술 동작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응용동작의 부재이다. 어떤 하나의 상황적 설정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장소 등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고 실전 활용도가 낮다.

경찰체포술 동작이 현장에서 범인의 대응형태나 경찰관들의 대응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현장 적용적인 면을 표본화하지 못했다.

5) 관심도

경찰관 스스로가 체포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업에 밀려 체포술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으며 직장훈련 시간에도 형식적인 훈련과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이 되고 있다.

경찰체포·호신술 경연대회에도 경찰서별 대표가 지방청을 대표하여 참여를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인원에 한정되어 있다.

IV. 경찰체포·호신술의 발전방향

범죄현장에서의 범인제압능력 제고를 위하여 체포술 교육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고 전 경찰관의 범인 제압능력을 획기적·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효율적 운영, 교육시설의 확보, 지도자의 사명감과 자질향상, 과학적인 프로그램과 체포술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1. 교육시간의 효율적인 운영

경찰대학의 대학생과 종합학교의 간부 후보생과정, 중앙경찰학교의 신입순경과정은 고정적인 체포술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나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시간 배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그 시간에도 시간 대우기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체포술은 그 특성상 반복 수련을 하여야 교육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경찰업무 특성상 그 정해진 시간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간에 수련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수련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사에 반영되는 가점제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의 직무과정 즉 경위기본교육과정, 경사기본교육과정, 정보, 수사 교통 등 각 과정에 체포술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 확보

경찰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이 비교적 양호하나 일선 경찰서 단위의 시설은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 경찰서 단위의 체육관 시설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갖춰진 시설에 시청각 교재도 설치하여 교육적 효과가 증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구대 및 치안센터 단위의 조직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련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체육도장을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관서 신축 및 증축시 수련장을 반드시 설계반영을 의무화하고 수련시설이 없는 경찰서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지도자의 사명감 및 자질향상

지도자는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무도종별 4단 이상의 지도자로 체포술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통하며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체육과학적인 이론 즉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역학, 인체학 등 다방면에서 지식을 습득하여 교육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교육적 철학을 겸비하고 사명감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인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지도자는 언행에 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품행이 방정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대학 무도교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여타 경찰서별 무도 사범은 경찰무도와 체포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하다 경찰서 무도사범도 그 직분에만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강한 체력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성상 무도교수요원과 사범은 계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능력을 보고 선발하며 선발된 교수요원 및 사범은 연구수당 및 교수요원 경력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4. 과학적인 프로그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체포·호신술은 범인이 공격해 올 때 제압·체포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동작도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관이 먼저 공격하여 제압·체포하는 등 범인의 대응 형태를 단계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대처한 형태를 사례별로 수집하여 자료화한 다음 기본동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동작을 새로이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찰체포·호신술을 살펴보면 신체적 여건과 장소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체포술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범인과 경찰관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하거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인체의 급소와 공방의 원리, 기초적인 동작 등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관심도 제고

경찰관 스스로 체포술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위이하 경찰관에 대한 '체포술 인증제' 등을 도입, 경찰서장이나 지구대장 등 소속기관장 주관 인증 심사 후 합격시 인증서를 수여하며 인증사실은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하여 승진 등 인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시 우수자를 표창하고 전국경찰 체포술 경연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V. 결과 및 제언

1. 결과

기존의 체포호신술 교육은 교육시간, 시설 등에서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신입순경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타 직무과정 및 일선 경찰관의 체포호신술은 모든면에서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 교육 시설은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를 제외하고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교육시설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지도자의 여건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무도 교수요원들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여건이 충분하나 일선 경찰서 사범들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여건이 어렵다. 그리고 지도자의 연구 자세도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

체포호신술의 15개 기본동작은 임의로 선정한 동작으로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제공격을 통한 제압·체포하는 기술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응용 동작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체포·호신술의 숙련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포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휘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제언

경찰관은 범죄자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인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적 허용한도에서

원활한 체포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체포·호신술도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범인과 경찰관의 신체적 특성과 현장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범인의 대응형태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며 경찰관의 대응형태를 사례별로 수집, 통계화 하여 외국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체포·호신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김상호, 경찰활동과 공공질서 유지, 경찰대학 경찰학 연구 제5호, 2003.
 김성길, 경찰무도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체육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김재현, 逮捕術, 경찰종합학교, 1998.
 김의환, 전국대학교 경찰관련학과 무도교육의 활성화방안, 경찰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김학운, 경찰체포술의 현황 및 대응전략, 경찰종합학교 교수요원 워크샵 자료집, 2004.
 경찰청, 경찰관 기본기량(무도·사격등)강화방안, 2004.
 경찰청, 경찰훈련, 경찰청, 1999.
 나영일, 朝鮮朝의 武士體育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1.
 미국경찰교본, 경찰 호신용 및 범인 체포용 기구 훈련교본 미국 시카고 경찰, 1993.
 박용문, 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지영, 경찰무도교육시스템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용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신상민, 경찰관 무도수련이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병욱, 警察逮捕 護身術, 인천지방경찰청, 2001.
 일본경찰대학, 체포술, 일본경찰대학, 술과교양부, 1990.
 영국센트렉스, 경찰학교, 경찰체포술, 영국센트렉스 경찰학교, 1990.
 오정주, 경찰체포호신술 교본, 도서출판 인동, 1999.
 오정주, 경찰무도의 역사적 배경,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최기문, 경찰체포술, 경찰청 교육과, 2004.

施策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남재성*

I. 서론

2003년 10월 8일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3년 주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총 조사대상 133개국 중 코스타리카, 그리스 등과 함께 공동 50위를 기록하였다.¹⁾

이러한 발표자료는 세계 교역 12위, 세계 수출국 12위라는 경제대국²⁾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최일선에서 범집행을 하는 권력 기관으로서 여타의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부패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전 법무부 장관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알려진 Ramsey Clark는 "경찰이 법을 어기면 누가 국민을 보호하겠는가?" 라는 말로 경찰의 부패를 꼬집은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부패지수는 각종 통계자료와 일반시민들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부패의 중심에 서있으며, 그 동안 제기되어온 많은 문제점과 해소방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 1996년부터 10점 만점 기준으로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1년 42위(4.2점), 2002년 40위 (4.5점), 2003년에는 4.3점을 얻어 50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가장 깨끗한 나라를 나타내는 10점 만점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처지고 있으며, 특히 2003년에는 전년도 보다 10계단이나 추락하여 범국민적인 부패추방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http://www.silvnet.net.kr/journal/culture_read).

2) 최근 WTO에서 발표한 2003년중 세계무역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7조 4,820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7조 7,650억불 기록 하였다. 한편 한국의 수출은 전체의 2.6%인 1,938억불로 세계 12위, 수입은 전체의 2.3%인 1,788억불로 세계 14위, 교역규모는 2.4%인 3,726억불로 세계 12위를 기록하였다. (<http://elpf.kiep.go.kr/project/LstNews.nsf/>)

최근까지도 그 동안 제기되어왔던 경찰 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각종 규제장치 강화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경찰공무원에게서 나타나는 부패행위들이 '경찰계급'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나 자체 해소방안에서는 전체 경찰공무원을 포괄하여 부패의 원인을 고찰하고, 해소방안을 설명,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부패는 경찰계급 중, 대민접촉이 많은 순경, 경장, 경사까지의 하위직 경찰공무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의 핵심층인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원인을 범죄이론을 통하여 고찰해 봄과 동시에 부패의 유발요인을 개인적, 조직적,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청과 대검찰청, 그리고 감사원 등의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3) <http://dic.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BA%CE%1%A4%BA%CE%06%D0&hw=1>.

4) 윤태범, "경찰공무원 부패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01, p. 89.

5) 한국행정연구원, "부패통제 개선방안", 1999, P. 9.

II.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경찰부패의 개념

'부패'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부패, 혹은 부정부패(Corruption)의 개념을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실정법 상 '부패'의 개념은 2002년 1월 28일 시행한 「부패방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법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부패'의 개념을 살펴보면, 윤태범(2001)의 경우는 부패의 개념을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직무상 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⁴⁾ 한국행정연구원(1999)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부패를 규정하고 있다.⁵⁾

한편 좀 더 세부적으로 공직사회 또는 사회전반의 부패를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나 경찰조직 상의 부패에 국한된 개념을

설명한 선행 연구로, 이상열(2003)은 경찰 부패를 "경찰관들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업무와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외적인 탈·불법적인 행위까지를 총망라해 금전적인 이익은 물론 탈·불법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⁶⁾

그리고 문성호(2002)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된 경찰의 일탈행위 전반"에 대하여 경찰부패라고 정의하였으며,⁷⁾ 표창원(2003)은 경찰부패의 개념을 민원제기의 잠재성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어 그 하나는 "관계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어 불만이나 민원제기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부정부패"로, 또 다른 하나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권력·지위 남용이나 잘못된 일 처리 태도로 인권, 재산 또는 신체를 침해하거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혀 불만이나 민원제기의 잠재성이 큰 행위"로 정의했다.⁸⁾

국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Holloway(2002)는 경찰부패에 대하여 "사적 혹은 조직적인 이익을 위해 경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⁹⁾ Roebuck and Barker(1974)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에 의해 일어나는 이상행위, 부도덕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 혹은

범죄행위"를 경찰부패로 정의하였다.¹⁰⁾ 그리고 Newburn(1999)에 따르면 경찰부패는 "사적인 혹은 조직적 권력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위법 행위 또는 과실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경찰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경찰부패란 "경찰관이 사적 혹은 조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분, 즉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금전적인 거래행위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의 총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

경찰부패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 역시 단순하게 논의될 수는 없다. Newburn(1999)은 경찰부패의 유형에 대하여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첫째,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권력적 부패, 둘째, 금품 등의 상납과 관련한 부패, 셋째, 체포된 피의자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범죄의 피해자 혹은 변사자의 재산이나 시신을 절취하는 경우, 넷째, 일명 'Skake downs'의 형태로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체포를 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유형은 외부의

6) 이상열,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 8-9.

7) 문성호, "경찰부패에 대한 범죄학적 접근", 「국가경영전략」, 2집 제1호,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2, p. 167.

8) 표창원, "경찰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 영국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8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03, p. 177.

9) Brandon Holloway, "Police Corrup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Justice Studies, December, 2002, p. 1.

10) J. B. Roebuck & T. Barker, "A Typology of Police Corruption", Social Problems, Vol 21, 1974, pp. 423-437.

11) Tim Newbur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olice Corruption : Lesson from the Literature", Police Research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비호, 여섯째, 위법한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 혹은 불법적인 교통 위반스티커 발부, 일곱째, 형법에 위반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 여덟째, 내부에서의 상납이나 뇌물수수, 아홉째, 마약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물의 불법적 횡령 등이다.¹⁰⁾

한편 문성호(2002)의 경우 경찰부패를 크게 3가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찰부패는 첫째, 전통적인 부패의 유형으로서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직무에 반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 행위라는 것을 말하며, 둘째,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죄(Police Crime)로서 경찰관 스스로가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¹¹⁾ 또한 이상열은 경찰부패의 유형을 사례별로 제시하면서 단속관련 사례유형, 규제관련

사례유형, 알선수뢰관련 사례유형, 사건무마 관련 사례유형, 편의 및 정보관련 사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이상에서 제시된 유형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유형을 문성호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조직 외부와의 금전적 거래에 관련된 부패유형¹³⁾으로 뇌물수수, 알선수뢰, 사건청탁, 각종 규제관련 청탁, 편의 및 정보제공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두 번째의 유형은 조직 내부적인 부패의 유형¹⁴⁾으로 인사와 승진 등의 청탁, 불법적인 공금 유용, 근무태만, 직무 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어 세 번째의 유형은 경찰관 스스로가 저지르는 범죄행위¹⁵⁾로 형법범령에 적용되는 모든 범죄사태라 할 수 있다.

Series Paper 110, 1999, pp. 7-8.

12) Ibid., p. 4.

13) 문성호, 전제논문, 2002, pp. 167-168.

14) 이상열, 전제논문, pp. 22-25.

15) 첫 번째 유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18일 부실 신탁의 운영권을 장악해 차명대출 등의 방법으로 17억여원을 부당대출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전 과학수사과장 최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6억원 가량의 빚을 지자 2001년부터 대구 수성구와 서구지역 2개 신탁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사입케 한 뒤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앉혀 운영권을 장악하고 차명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17억1천800여만원을 부당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연남뉴스, 2004년 11월 18일자).

16) 시민에 대한 경찰관의 불법적 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도 살인 사건 수사과정에서 10대 용의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장철의 판사는 18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경찰서 주모(35)경사 안모(32)경장 등 경찰관 2명과 전직 경찰 안모(3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으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증거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하다"며, "모든 사건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사과정에 폭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주경찰서 형사계 소속이던 지난 2001년 9월 당시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2000년 8월과 10월 원주시 단계동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취객상대 강도 살인 사건피의자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목을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수사에 의해 2001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10대 청소년 3명은 2002년 2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6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청소년들에 대한 무죄확정 이후 부모들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경찰을 고소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조선일보, 2004년 8월 18일자).

3.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발요인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또는 원인은 제시하는 각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유발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표창원(1998)은 경찰부패의 원인을 경찰업무의 자체적인 특성, 과중한 업무와 책임, 그리고 가정 및 주변환경 등의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비현실적 법률, 경찰 문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⁶⁾

또한 김택(1999)은 사회문화적인 원인, 제도적인 원인, 경찰 조직의 내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¹⁷⁾ 이상열(2003)은 개인적, 조직내재적, 업무환경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⁸⁾

또한 홍근영(2004)은 경찰부패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요인, 법체계 및 부패대응의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¹⁹⁾

물론 이와 같은 연구들이 경찰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는 그 범위 및 관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인, 즉 개인적, 조직 내부적,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주로 경찰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책임감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개인적 요인은 경찰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욕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적절히 통제해야만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패 경찰관들의 경우,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요청되는 윤리의식이 미비하며, 또한 부패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17) 최근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대표적인 경찰관 범죄행위의 사례이다: ①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을 위반 혐의(성매수)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04년 3월22일 밤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A(17)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4명과 만나 각각 30만원을 주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헤럴드경제, 2004년 6월 17일자). ② 경찰관 신분으로 납치·강도 사건에 가담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4월 경찰관 재직 중 2차례 납치·강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공범 강모(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지난 12일 각각 선고했다. 한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증권브로커 김모(34)씨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귀가하는 김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데 이어 나올 뒤 다른 증권브로커 김모(32)씨를 승합차로 납치, 서울간 중남 서천 군 등지로 끌고 다니며 6000여만의 수표를 빼앗고, 김씨의 동생에게 몸값으로 35억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문화일보, 2003년 10월 23일자).

18) 표창원, "경찰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들과 영국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11호, 치안연구소, 1998, p. 21.

19) 김택, 「관료부패론」(서울: 학문사, 1999), pp. 126-146.

20) 이상열, 전제논문, pp. 37-40.

21) 홍근영, 「공무원범죄론」(서울: 도서출판 헤르메스, 2004), pp. 43-63.

인지도가 낮아 부패행위를 당연시하고 특별한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어떠한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분리시킨 채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적 소질, 특히 개인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조직 내부적 요인

경찰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조직 내부적 요인일 것이다. 물론 부패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윤리의식 앞에서는 발생할 수 없지만, 인간이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이상 무엇보다 경찰관이 속해 있는 집단 내부의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들로는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의 부족이다. 경찰관들은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교대제 및 잦은 야간 근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수시로 위협에 노출되는 업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라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하위직(비간부직) 경찰관들이 상위직(간부직) 경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조직내의 지위향상 대신 다른 선택 수단으로써, 금전적인

22) 박성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40-41 참조.

부분과 관련되는 각종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의 입직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비간부 출신의 경우 상위계급, 특히 경위급 이상의 간부로 승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위급 이상의 신규 채용자가 그 직위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간부 출신의 경찰관들에게 상위직으로의 승진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³⁾

둘째,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현재 경찰의 부패방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후진압적인 측면, 즉 감찰이나 감사와 같은 '사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패를 통제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 사후적인 대책이 포괄되는 방식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후에 미봉책에 그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도한 업무량과 책임이다. 경찰은 법집행자로서, 대민 서비스의 봉사자로서, 범죄의 예방자로서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민 관계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업무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패의 고리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넷째, 경찰내부의 하위문화이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 자체의 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찰 조직은 타 조직에 비하여 더욱 폐쇄적이고 경직된 구조와 비밀주의, 충성주의 및 지나친 동료애 등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할 온상지로서 기능하게 된다.²⁴⁾

3) 사회구조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은 경찰관의 생각과 가치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전반의 도덕적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각종 사회적 부조리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 등의 가치관이 팽배하며, 도덕적 불감증으로 사회가 흘러갈 때 경찰관들 또한 예외 없이 부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4.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학의 제이론

1)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Robert Merton은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이용될 있는 수단사이의 괴리로 발생하는 긴장상태를 "아노미(Anomie)"로 보고, 이러한 아노미상태를 범죄원인으로 보았다.²⁵⁾ 즉, 머튼은 범죄의 원인을 하층민들이 구조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수단이 없고, 동등한 기회가 차단되어 겪게 되는 긴장과 좌절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획득하고자 하는 유사한 목표들을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목표성취능력은 '계층'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화된다고 주장한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제적인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곧 합법적으로 부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욕망과 목표들이 계층과 지위에 따라 제도적인 수단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켜 놓아,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기회구조를 상실한 사람들은 긴장을 유발하는 아노미 상태에 놓이게 된다.²⁶⁾

결국, 그러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목표들을 획득하기 위해 일탈적인 해결책 또는 범죄적 해결책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동 이론의 골자이다.

23) 표창원, 전계논문, 1998, p. 21.

24) Frank E. Hagan, Introduction to Criminology: Theories, Methods, and Criminal Behavior, 5th Edition, 2002, p. 149.

25) Larry J. Siegel,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Wadsworth, 2001, p. 201.

주로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사회에 관심을 가진 머튼은 목표달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합법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아노미 상태에 빠져든다²⁶⁾고 주장하였다.

제도화된 수단에 대한 강조가 약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들이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Merto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고찰해 보면, 주로 조직적 혹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사회전반의 목표 상승과 맞물려 스스로의 목표도 상승하지만, 자신의 지위로 인한 목표달성 능력이 상위직 경찰공무원에 비해 한정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목표달성 수단은 승진의 경우 인사적체로 인하여 실질적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부족한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목표, 즉 상위직으로의 신분 상승과 부의 축적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부패라는 합법적인 기회구조를 상실하게 되어 비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2) 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Sutherland는 1939년에 차별적접촉이론을 제시하면서, 법 위반에 호의적인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비행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범죄성에 호의적인 가치들과 태도들을 받아들기 때문에 범죄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즉 범죄는 학습되는 것이고, 이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의해 학습된다고 한다.

또한 동 이론은 그 범죄성의 차이를 빈도, 지속성, 우선성, 강도의 차이에서 찾았으며, 법 위반에 호의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양뿐만 아니라 질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²⁸⁾ 이처럼, 차별적 접촉이론에서는 법 위반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Sutherland는 화이트 칼라범죄나 일반범죄나 다를 바 없으며, 화이트 칼라 범죄자도 화이트칼라범죄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정직한 기업인들보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과의 더 많은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⁹⁾

26) Frank E. Hagan, op. cit., p. 150.

27) Ibid, p. 157.

28) Ibid, p. 159.

29) 이윤호, 「범죄학개론」(서울: 박영사, 2002), p. 114.

하위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 역시, 해당 경찰공무원이 그 부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청렴한 사람들보다 그 행위를 상습화하고, 당연시여기는 내부 혹은 외부의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Matza와 Sykes의 중화이론 (Neutralization Theory)

차별적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필요한 범죄기술, 가치, 태도들을 학습해야 하는 반면에, 범죄자들은 관습적인 가치와 태도들을 지니고 있어 그 특정형태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죄의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

Matza와 Sykes는 그러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중화의 기술을 제시했는데, 책임의 부인·가해의 부인·피해의 부인·비난자에 대한 비난·상위의 충성심에의 호소가 그것이다.³⁰⁾

예컨대, 하위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자신의 동료나 상사의 부패행위를 보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III.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의 실태

본 항에서는 공식통계³¹⁾를 중심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및 하위직(순경-경사)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및 징계추이를 살펴 현 실태를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 발생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경찰은 타 기관에 비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찰조직의 부패의 지수가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아래의 <표 III-1>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경찰청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청의 청렴도는 5.40으로 일반 청단위의 6.33, 그리고 전체 청렴도인 6.4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수치는 경찰의 부패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부패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Larry J. Siegel, op. cit., p. 234.

31) 사용된 자료는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의 자료이다.

32) 한편 경찰청과 같은 청단위의 부패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진청(7.39), 산림청(7.15), 중기청(7.11), 식약청(6.94),

〈표 III-1〉 경찰청 청렴도 조사결과

청렴도 측정결과		측 정 업 무
경찰청	5.40	① 유해업소 단속 ② 교통사고 처리 ③ 음주 및 무면허 단속 ④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⑤ 계약
청단위	6.33	
전체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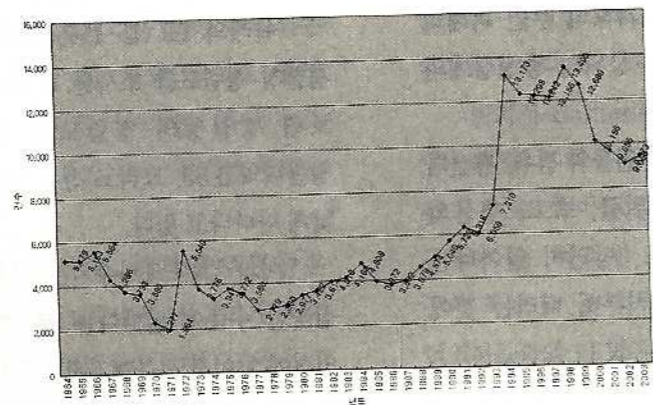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2003 국정감사자료.

2.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1) 연도별 공무원의 총 범죄건수 추이³³⁾

다음의 〈그림 III-1〉은 1964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연도별 공무원의 총 범죄, 그리고 〈그림 III-2〉는 동기간에 발생했던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를 분석한 것이다. 공무원범죄, 전체 공무원이 저지른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1998년 13,490건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02년도에 9,056건, 그리고 2003년도에는 9,373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경찰이 저지른 범죄는 〈그림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약 1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02년도에는 918건, 2003년도에는 955건의 범죄발생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1〉 연도별 공무원의 총 범죄건수 추이(1964년도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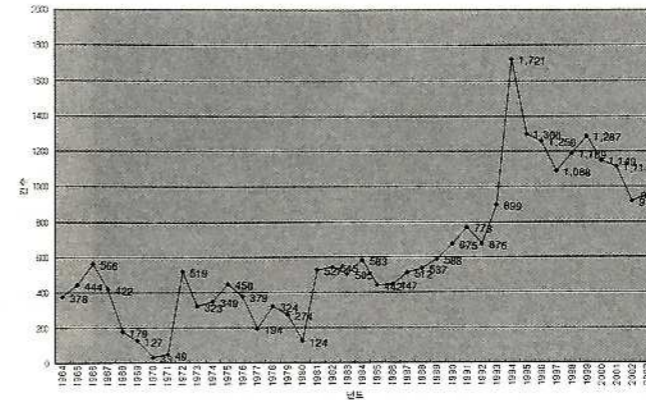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특허청(6.53), 해경청(6.49), 문화재청(6.32), 철도청(5.92), 국세청(5.82), 관세청(5.55), 검찰청(4.26) 등이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검찰청이 경찰청 보다 더욱 낮은 청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검찰의 부패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33) 본 항에서 논하고자 하는 공무원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뢰와 증뢰) 등의 공무원범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 지는 모든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림 III-2〉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범죄건수 추이 (1964년도 - 2004년도)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다수.

2) 범죄유형별 경찰의 공무원범죄 추이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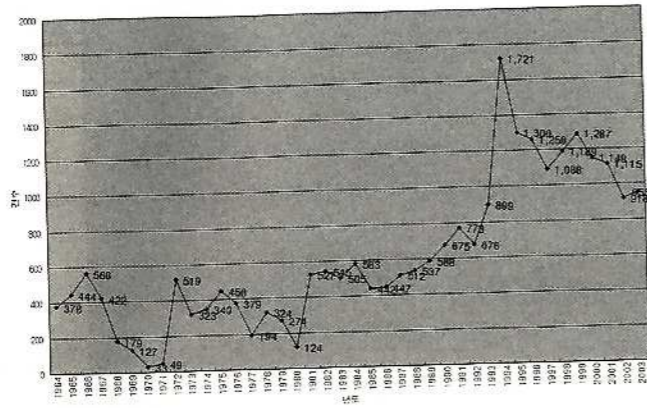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공무원범죄는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일반적인 범죄의 개념과는 달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과 같은 유형에 국한되어 설명되는 공무원범죄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무원범죄의 추이와 더불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추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1)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1994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는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이후 2000년도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 그리고 이후 2001년 238건, 2002년 236건, 2003년 214건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의 증감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이전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공무원범죄 발생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34) 본 항에서 논하고자 하는 공무원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뢰와 증뢰) 등의 공무원이 범하는 공무원범죄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림 III-3〉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1964년도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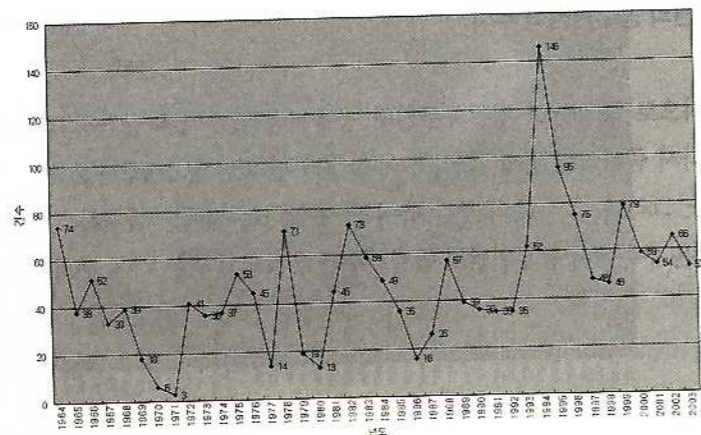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2)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 추이

경찰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범죄 발생건수를 세부 유형별로 파악해보았을 때, 우선 직무유기의 경우 2000년 59건, 2001년 54건, 2002년 66건, 2003년 58건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III-4〉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 추이(1964년도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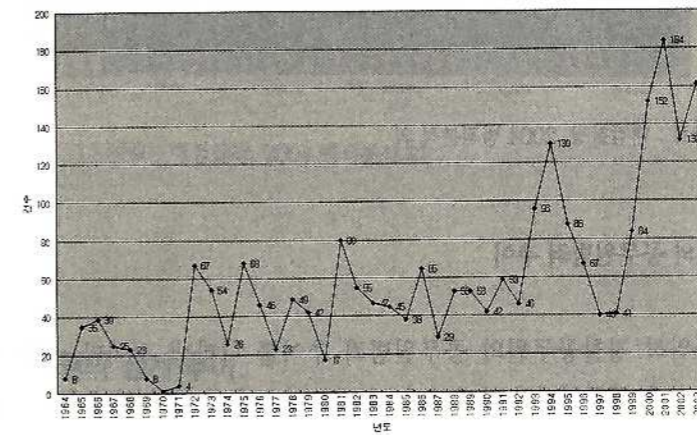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3)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 추이

직권남용은 경찰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공무원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41건의 발생빈도를 보였던 1998년을 계기로 급등하고 있는 직무유기는 2001년 184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 이후 2002년 132건, 2003년 161건 등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관의 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III-5〉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 추이(1964년도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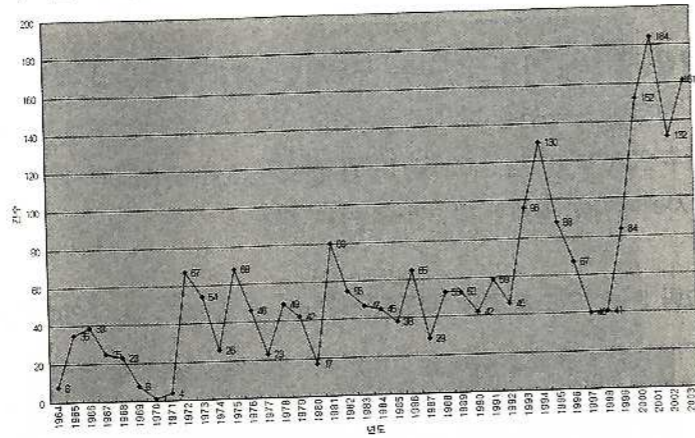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4)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뇌물 추이

경찰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중죄와 수뢰가 합쳐진 개념이다.

〈그림 III-6〉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뇌물범죄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에 있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1994년도에 97건의 발생빈도를 보인 이후 2000년 58건으로 잠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3년도에 16건, 2003년도에 22건으로 전체의 10%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III-6〉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뇌물 추이(1964년도 - 2003년도)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3)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표 III-2〉는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경장계급에 있어 가장 높은 공무원범죄 발생 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경과 경사계급에 있어서는 비교적 균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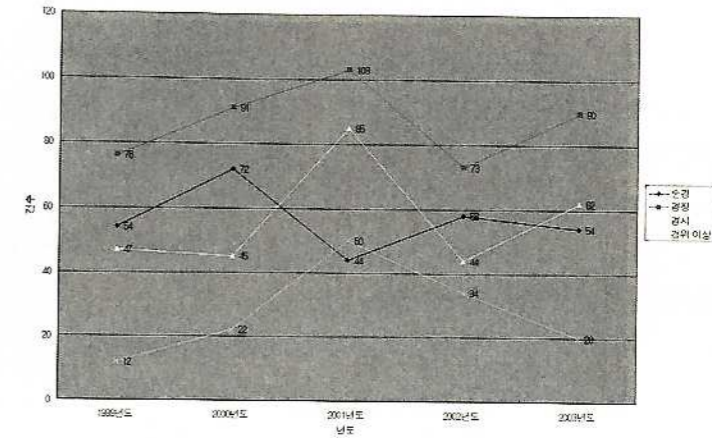
또한 〈그림 III-7〉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에 대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증감 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 III-2〉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순 경	경 장	경 사	경위 이상
1999년도	54	76	47	12
2000년도	72	91	45	22
2001년도	44	103	85	50
2002년도	58	73	44	34
2003년도	54	90	62	20

자료 :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자료.

〈그림 III-7〉 연도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공무원범죄 추이



자료 :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외.

3.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 추이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순경, 경장, 경사로 한정하였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징계추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도별 경찰공무원 징계추이

〈그림 III-8〉은 연도별 경찰공무원의 징계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2년도의 경우 828건으로 전년도 1,055건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 7월까지의 통계에 있어서도 446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전체적인 경찰공무원의 징계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찰공무원의 부패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